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023-14

문화재관계법령집

2011. 04



총 목 차

○ 문화재보호법령	3
○ 문화재위원회 규정	319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32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415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573
○ 문화재보호기금법령	623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령	633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53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65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68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695
○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699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09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723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739

문 화 재 보 호 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7 제2조(정의) 17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1조(목적) 17 제2조(정의) 17	제1조(목적) 17
제2장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20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21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22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24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20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1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24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25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26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27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7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29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25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26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29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27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30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31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33 제17조의 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크센터의 설치) 34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35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35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36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37 제22조(지원 요청) 38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35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35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31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31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32 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33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38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9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41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41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41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38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39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1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42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43	제8조(조사보고서) 38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44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45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47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48
 제32조(가지정) 49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50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50
 제35조(허가사항) 51
 제36조(허가기준) 54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55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55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57
 제40조(신고 사항) 58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59
 제42조(행정명령) 62

제16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44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44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48
 제19조(가지정) 49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50
 제21조(허가절차) 51
 제22조(허가서) 54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58
 제24조(전수 교육) 59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60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60
 제27조(전수 장학생) 62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44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45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47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 48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50
 제14조(허가신청서) 51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52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54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55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55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56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57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58
 제22조(전수 교육) 59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60
 제24조(전수 장학생) 62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6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64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64
제44조(정기조사) 65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65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65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65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66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65
제46조(손실의 보상) 67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67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67		
제3절 공개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67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 67
제49조(관람료의 징수) 69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68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 69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69 제3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69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70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70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70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71		제33조(보조금) 70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71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71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73
		제36조(등록 사항 등) 73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73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74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75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76
 제58조(등록의 말소) 77
 제59조(준용 규정) 77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78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81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82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83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83
 제65조(처분의 제한) 84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84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74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 75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76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78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79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81

제37조(기술 지도) 73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74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75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76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77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78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 78
 제44조(감정자격) 79
 제45조(감정 요령) 80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80
 제47조(수당의 지급) 80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81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8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84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84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 85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85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85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87		
제72조(경비부담) 87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87
제73조(보고 등) 88	제40조(보고) 88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88
제74조(준용규정) 89		
제10장 문화재 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90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90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90
제76조(자격 요건) 91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91
제77조(결격사유) 91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91
제78조(준수 사항) 92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 92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92		제56조(폐업신고) 92
제80조(허가취소 등) 93		제57조(행정처분기준) 93

제11장 보 칙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93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94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96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96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97
제86조(포상금)	97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9
제88조(청문)	100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1

제12장 벌 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101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102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102
제93조(가중죄)	104
제94조(「형법」의 준용)	104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104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105
제97조(미수범 등)	105

제42조(권한의 위임)	94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97
제44조(제보의 처리)	97
제45조(포상금의 지급)	98
제46조(포상금의 배분)	98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99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94
제59조(제보 조서)	97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98
제61조(포상금의 청구)	98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9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8조(과실범) 105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105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106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107		
제102조(양벌규정) 108		
제103조(과태료) 108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09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9	
부 칙 110	부 칙 110	부 칙 110
	시행령 별표 115	시행규칙 별표 127
		시행규칙 서식 141

문화재보호법

1962. 1.10. 제정 법률 제961호
 1963. 2. 9. 법률 제1265호
 1963.12. 5. 법률 제1462호
 1963.12.16. 법률 제1583호
 1965. 6.30. 법률 제1701호
 1970. 8.10. 법률 제2233호
 1973. 2. 5. 법률 제2468호

 1982.12.31. 전문개정 법률 제3644호
 1984.12.31. 법률 제3787호

시행령

1962. 6.29. 제정 각령 제843호
 1965.11.10. 대통령령 제2288호
 1969. 1. 8. 대통령령 제3713호
 1970. 8.28. 대통령령 제5306호
 1970.10.10. 대통령령 제5358호
 1973. 3.23. 대통령령 제6589호
 1974. 5. 9. 대통령령 제7140호
 1975. 7. 2. 대통령령 제7681호
 1979. 8.29. 대통령령 제9578호
 1983. 8. 3.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11184호
 1985. 5.10. 대통령령 제11696호

시행규칙

1964. 2.15. 제정 문교부령 제135호
 1969. 6.19.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6호
 1970.12.16.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19호
 1973. 6.28. 문화공보부령 제32호
 1976. 1.10. 문화공보부령 제52호
 1976. 6. 7. 문화공보부령 제55호
 1979. 3.16. 문화공보부령 제66호

 1983. 9.19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77호
 1984. 6. 9. 문화공보부령 제80호

1987.11.28. 법률 제3947호	1987. 1.27. 대통령령 제12068호	1984, 8.30. 문화공보부령 제82호
1988.12.26. 법률 제4031호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85. 5.18. 문화공보부령 제86호
1989.12.30. 법률 제4183호	1991.11. 7. 대통령령 제13500호	1986. 9. 1. 문화공보부령 제92호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87. 3. 2. 문화공보부령 제93호
1995. 1. 5. 법률 제4884호	1994.10. 7. 대통령령 제14399호	1988. 5. 3. 문화공보부령 제96호
1995.12.29. 법률 제5073호	1995. 8.17. 대통령령 제14750호	1988.12.27. 문화공보부령 제98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709호	1989. 3.20. 문화공보부령 제100호
1999. 1.29. 법률 제571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1989.11.28. 문화공보부령 제102호
1999. 5.24. 법률 제5982호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0호	1990. 3.29. 문화부령 제2호
2000. 1.12. 법률 제6133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7호	1991. 3.15. 문화부령 제3호
2001. 3.28. 법률 제6443호	1999. 6.30. 대통령령 제16413호	1991.11. 7. 문화부령 제9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2000. 7.10. 대통령령 제16902호	1994.11. 7. 문화체육부령 제17호
2002.12.30. 법률 제6840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1996. 7.10. 문화체육부령 제29호
2005. 1.27. 법률 제7365호	2001. 2.24. 대통령령 제17137호	1996.12.30. 문화체육부령 제3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2001. 6.30. 대통령령 제17279호	1999. 7.20. 문화관광부령 제27호
2005.12.23. 법률 제7734호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2호	2000. 9. 1. 문화관광부령 제44호

2005.12.29.	법률 제7796호	2003. 6.27.	대통령령 제18026호	2001. 9. 8.	문화관광부령 제53호
2006. 2.21.	법률 제7849호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7.14.	문화관광부령 제77호
2006.10. 4.	법률 제8050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5. 7.28.	문화관광부령 제121호
2007. 1.26.	법률 제8278호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6호	2006. 6.23.	문화관광부령 제137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12.29.	문화관광부령 제153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5.	대통령령 제19528호		
		2006. 6.29.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4호		
2007. 4.11.	전부개정 법률 제8346호	2007. 8.17.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29.	전부개정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9.26.	대통령령 제21046호	2007.11.22.	문화관광부령 제173호
2008. 3.28.	법률 제9002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8. 6.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
2008. 6.13.	법률 제9116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38호	2008. 9.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8.11.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2.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4.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p>2010. 2. 4. 전부개정 법률 제10000호</p> <p>2011. 4. 6. 법률 제10562호</p>	<p>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p> <p>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p> <p>2010.10.01. 대통령령 제22420호</p> <p>2010.12.29.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560호</p>	<p>2009. 5.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p> <p>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p> <p>2011. 2. 1. 전부개정 문화관광부령 제76호</p>
--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p>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경관이 뛰어난 것</p> <p>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p> <p>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p> <p>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p>	<p>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 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p>	

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p> <p>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p>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p>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p>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p>	<p>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이 조에서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재청장은 제 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p>	

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p>		<p>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p> <p>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p> <p>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p> <p>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p> <p>2. 제1항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p> <p>3. 제1항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p>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p> <p>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p> <p>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p>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과 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p>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p>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 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7조의 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p>	<p>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 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2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국가지정문화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지정</p> <p>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p>	<p>제8조(조사보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2. 중요무형문화재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

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 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인정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p> <p>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p> <p>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p>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16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인정 해제의 이유 <p>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p>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

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p>		<p>밖의 특징</p> <p>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p> <p>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p> <p>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p> <p>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p> <p>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p>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p>	<p>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p>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p> <p>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해제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p>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영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p>

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월 이내에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통지와 가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 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관리 및 보호</p> <p>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p> <p>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p> <p>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p> <p>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p>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p> <p>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p> <p>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p>	<p>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p>	<p>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p> <p>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p> <p>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p> <p>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p> <p>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p>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

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p>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p>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p>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p>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p> <p>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 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p>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 	<p>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p>	<p>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p> <p>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p> <p>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p>

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전수 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승 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p>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p>

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p>	<p>제27조(전수 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p>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p> <p>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 교육 기간,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p>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과 같다.</p> <p>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p>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p> <p>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p>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46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p> <p>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p> <p>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p> <p>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p>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p> <p>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

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3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p> <p>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 	<p>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p> <p>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p>

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 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p>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p> <p>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p> <p>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p> <p>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p> <p>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p> <p>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p> <p>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p> <p>④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p> <p>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p>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 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일반동산문화재</p> <p>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p>	<p>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 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p> <p>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p>

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p> <p>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p> <p>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문화재 감정위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p>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 결과 회보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p> <p>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 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p> <p>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p>	<p>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p> <p>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p> <p>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p>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40조·제42조·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국외소재문화재</p> <p>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p>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p> <p>3.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40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문화재 매매업 등</p> <p>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p> <p>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도</p>	<p>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p>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 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8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p> <p>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p> <p>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p> <p>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p>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插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8.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9.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 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853 496 1205 1066"> <thead> <tr> <th>등급</th> <th>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2,000만원</td> </tr> <tr> <td>2등급</td> <td>1,500만원</td> </tr> <tr> <td>3등급</td> <td>1,000만원</td> </tr> <tr> <td>4등급</td> <td>500만원</td> </tr> <tr> <td>5등급</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 포상금은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p>89호서식에 따른다.</p> <p>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p>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2.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移築)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

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p>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3.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12장 벌 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p> <p>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p> <p>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 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 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 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p>제95조(사적 등예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p>		

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미수범 등) ①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p> <p>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p> <p>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p> <p>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p> <p>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p>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하는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5.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p> <p>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p> <p>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1.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00호,2010.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p> <p>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p>	<p>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횡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60호,2010.1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호,2011.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p>

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정·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p> <p>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p> <p>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p> <p>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p> <p>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p> <p>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p> <p>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p> <p>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p> <p>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p> <p>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p> <p>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p> <p>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p> <p>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p> <p>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p> <p>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p> <p>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
항제1호·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
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
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
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
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
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
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
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
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0562호,2011.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p> <p>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p> <p>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별표 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재의 종류	지정 기준
보물	<p>1. 건조물(建造物)</p> <p>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塔),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2. 전적·서적·문서</p> <p>가. 전적류</p> <p>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p> <p>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p> <p>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p> <p>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3. 회화·조각</p> <p>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p> <p>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p> <p>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p> <p>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p> <p>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p> <p>4. 공예품</p> <p>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p> <p>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p> <p>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p>

	<p>5. 고고자료</p> <p>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p> <p>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p> <p>6. 무구(武具)</p> <p>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p> <p>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p>
<p>국보</p>	<p>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p> <p>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p> <p>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製作意匠)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p> <p>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p> <p>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p>
<p>중요 무형문화재</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이 경우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가. 연극 인형극·가면극</p> <p>나. 음악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산조(散調),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p> <p>다.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p> <p>라.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p> <p>마.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p> <p>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p>

<p>사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p>명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천연
기념물

1. 동물
 -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 다.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2. 식물
 -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3. 지질·광물
 -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p>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피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p>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p>4. 천연보호구역</p> <p>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p> <p>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p> <p>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p> <p>5. 자연현상</p> <p>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p>
<p>중요 민속문화재</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p> <p>가. 의·식·주에 관한 것</p> <p>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p> <p>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p> <p>농기구·어렵구(漁獵具)·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p> <p>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p> <p>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p> <p>라. 교역에 관한 것</p> <p>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p> <p>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p> <p>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p> <p>바. 신앙에 관한 것</p> <p>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p> <p>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p> <p>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p> <p>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p> <p>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p>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 문화재의 보호 구역	<p>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재가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p> <p>나. 그 밖에 해당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2. 사적의 보호 구역	<p>가. 선사시대 유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p>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p>다.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p>라.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p> <p>마.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p> <p>바.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p> <p>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3. 명승의 보호 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가.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임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석비(石碑)·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6.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10	100	200
나. 법 제40조제1항제5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2항	10	100	200
다.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라. 법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3항	100	200	300
마. 법 제40조제1항제8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50	100	200
바. 법 제40조제1항제9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10	50	100
사.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아.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500	500	500
차.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카.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문화재 매매·교환 등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타.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5호	50	50	5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 별표 6)

[별표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연령(제24조제3항 관련)

분야별	선발연령	비고
연극분야	18세 ~ 40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음악분야	18세 ~ 30세	
무용분야	18세 ~ 30세	
공예분야	18세 ~ 35세	
민속놀이분야	18세 ~ 40세	
제례·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세 ~ 40세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보존 대상			제외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 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 다작(多作)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 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난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 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삽도 등	
불교 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조사도(16·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 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 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중요 작가나 유파(流波)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 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 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일반 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계수리, 경상, 관대함, 반진고리, 베투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p>○ 장식·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박락 등 훼손·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p> <p>○ 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p> <p>○ 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 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p> <p>○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p>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함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띠잠,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 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범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단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 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 공예	토·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 ○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 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 ○ 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은 제외)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목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훈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 또는 낙질도(洛帙度)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識記)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 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소장의 원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복사본) 또는 현대작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운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路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홀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품 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 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 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 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 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통고류(혼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 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향교 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 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 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 친필로 쓰이지 않고 모서된 것 ○ 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복사본) 또는 현대작
	탁본류	탁본 등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줄어들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또는 현대작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부식·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 수록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 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고고자료	선사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하게 부식·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자연사자료	자연과학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골류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하게 부식·훼손되어 역사적·학술적·과학적·심미적·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과학 기술 용구 및 민속 자료	생업기술용 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 제작되고 양식상·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 파손·부식·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 ○ 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 (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용구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 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 측 교 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측량용구, 화폐·우표 등)	
	이 동 운 송 기술용구	교역용구 등	
		이동용구 등	
	공예기술용 구	운송용구 등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 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 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유희 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문양·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외국문 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 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 제작된 지 10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별표 3]

비문화재 확인표지(제48조제3항 관련)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제3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문화재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재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문화재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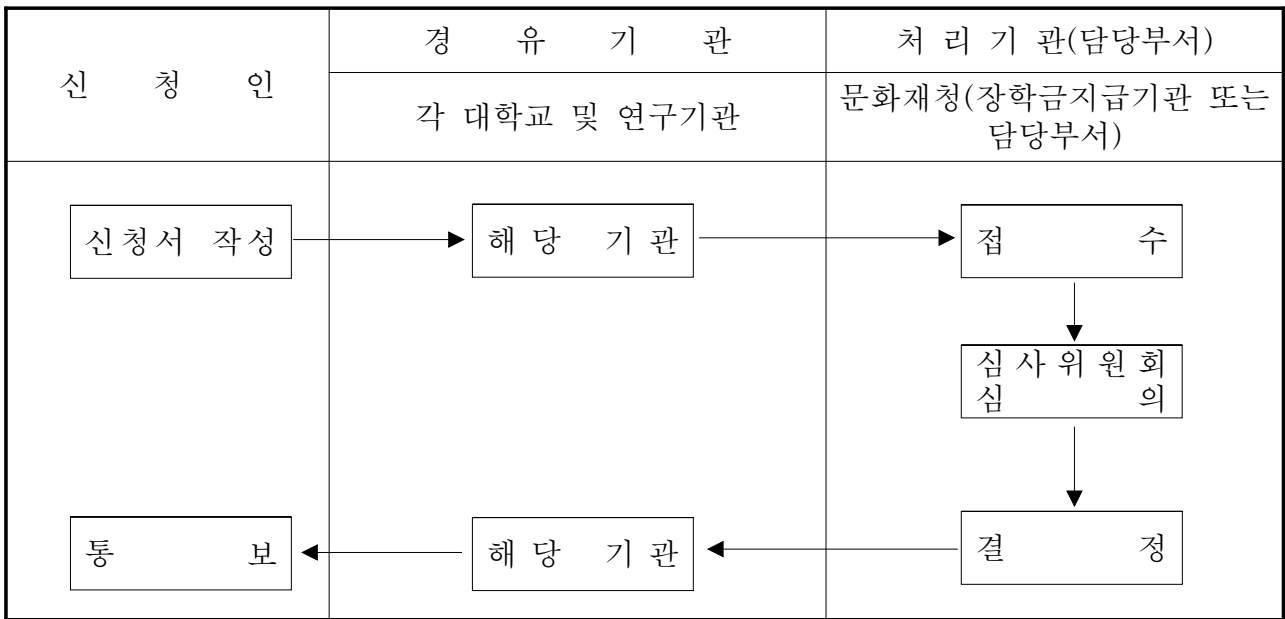
[문화재 입지 현황분석]란의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식물 등), 문화재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②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재에 포함된 점(點)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의 연구 또는 학업에 전력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소속 학교 또는 소속 기관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생 년 월 일

귀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조 사 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 요 지 정 사 항	① 문화재 종류			
	② 문화재 명칭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④ 연혁·유래 및 특징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검 토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① 문화재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도지정문화재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 ② 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문화재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작성요령

- ①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②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 ③ 명칭
 - 문화재의 성격·유형·시대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④ 시대/연대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 ⑤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 ⑥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적습니다.
- ⑦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 ⑧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 ⑨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 ⑩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 ⑪ 연혁/유래/특징
 -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 ⑫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
 - 진정성·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 화 환 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 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 속 시 설 물 (주 변) 현 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 재 분 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국 보 지 정 서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p>※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제 호

보 물
지 정 서
중요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제23조 보 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위 문화재를 로
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p>※ 주의사항</p> <p>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제 호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 지정서 부록</p>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번호	명칭	재료	구조·형식·형태	규격	수량	그 밖의 특징

제 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div> 지정서 부록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정서

명 칭 :

소재지 :

위 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p>※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 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인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⑤ 보유 기능· 예능	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⑦ 생년 월일	⑧ 주소	⑨ 발급 구분	⑩ 인정 연월일	⑪ 발급 연월일	⑫ 발급자
		③지정 번호	④ 명칭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재

지 정 종 류:

문화재 명칭:

지 정 수 량:

지 정 일: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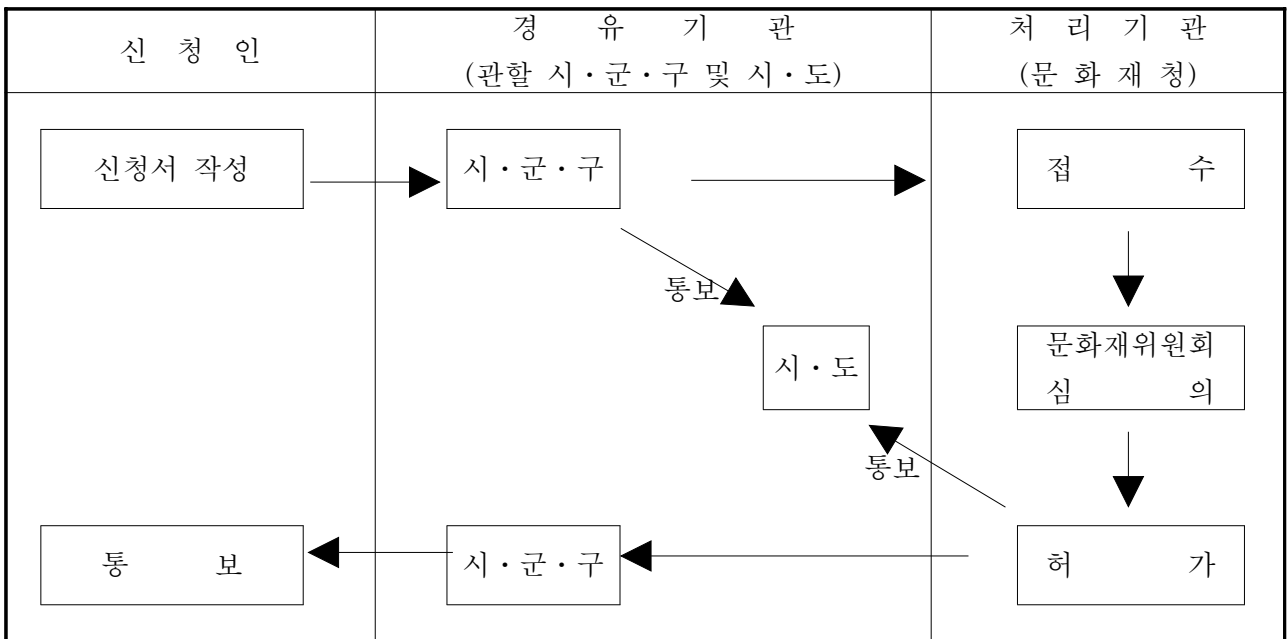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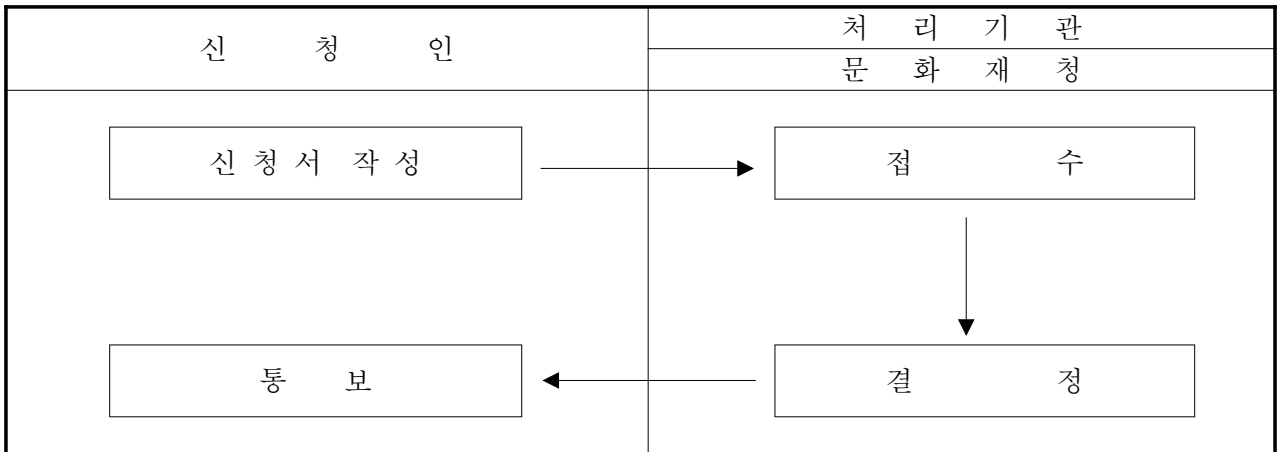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소재지			
⑧ 신청사유				
⑨ 신청구분			⑩ 수량	
⑪ 작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⑫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⑬ 성명		⑭ 주소	
기술담당자	⑮ 성명		⑯ 생년월일	
⑰ 소요경비			⑱ 재원	
⑲ 그 밖의 사항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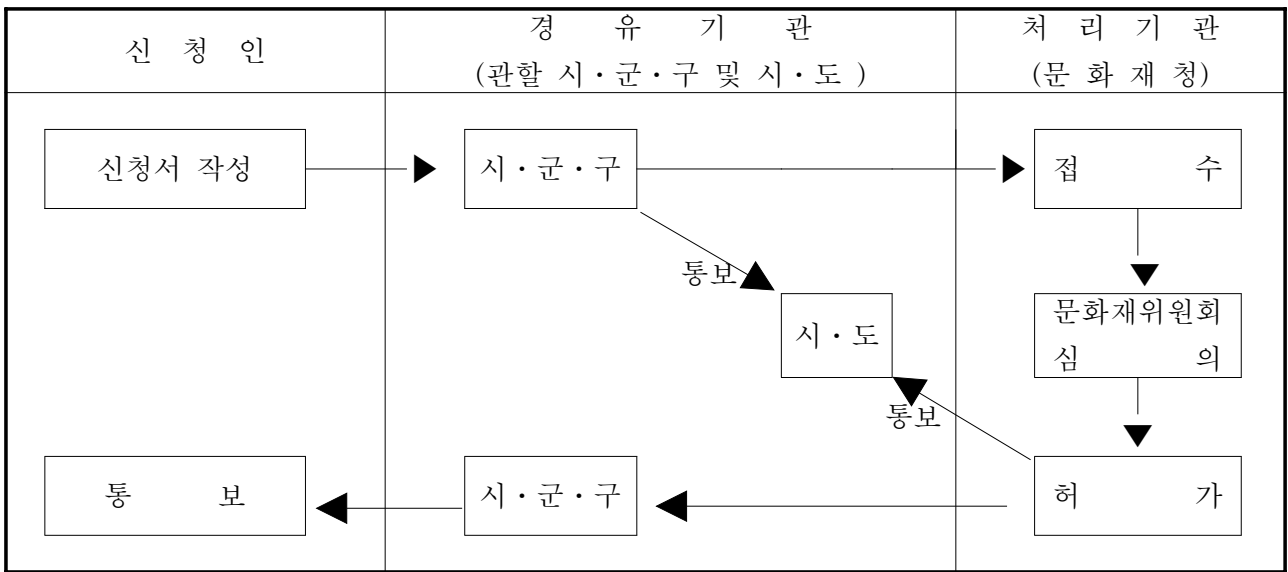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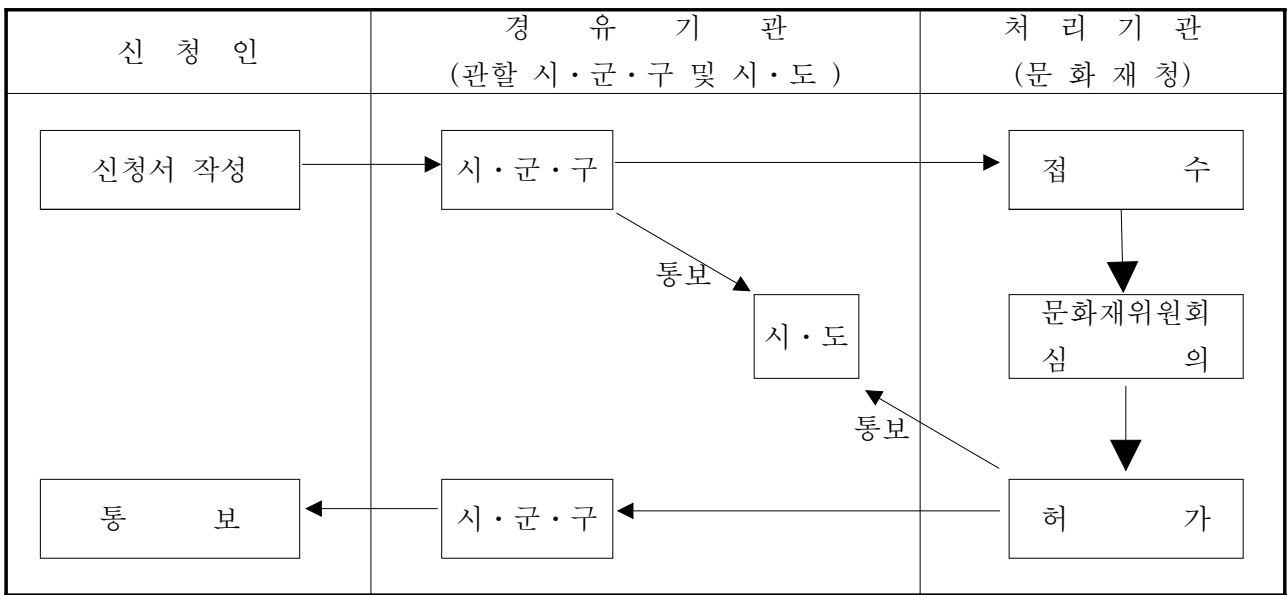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p>「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재 청 장 직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용					
	변경 허가 내용					
	기 간					
허가 조건						
<p>「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재 청 장 직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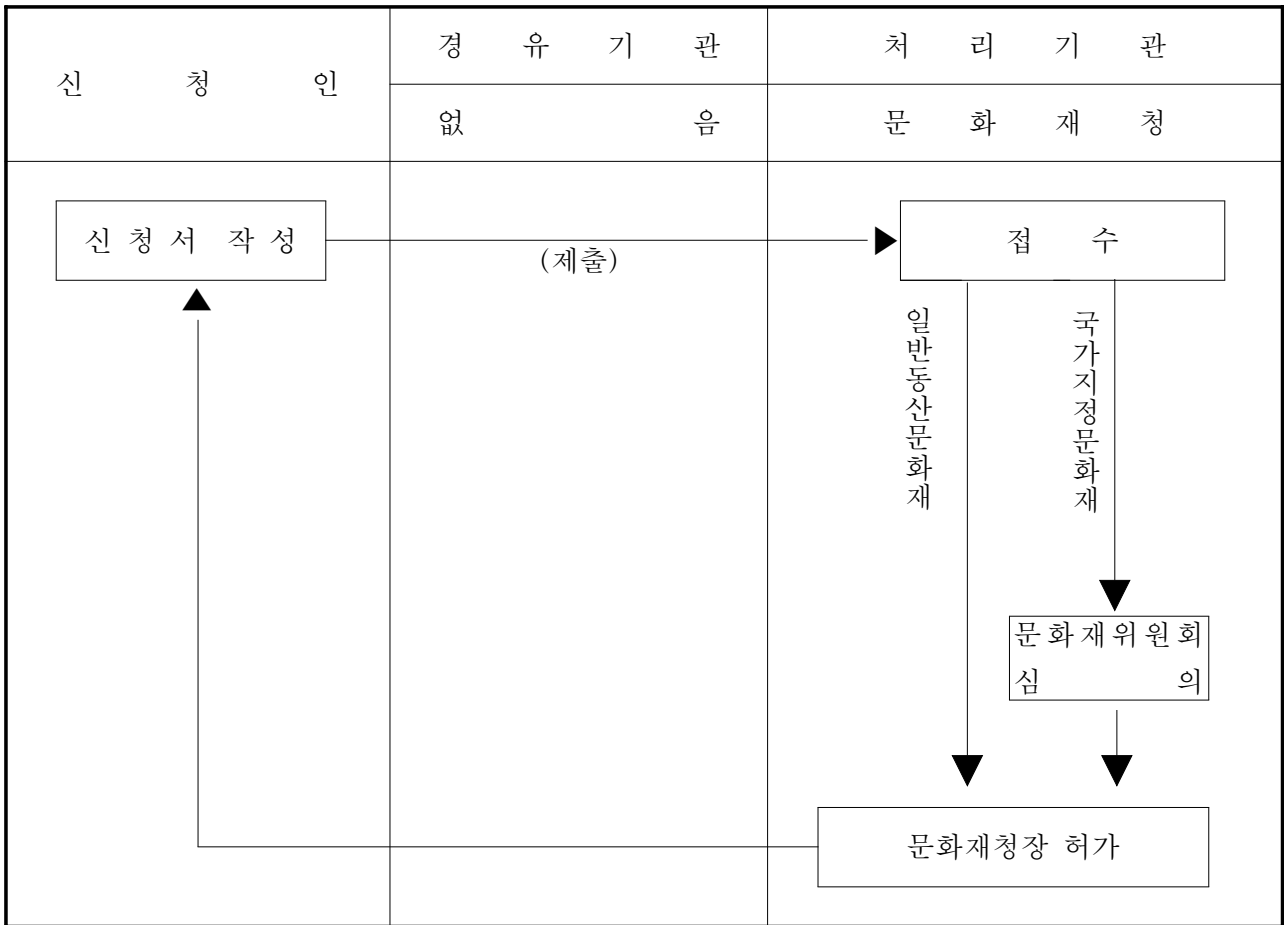
보 고 자	처 리 기 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문화재청장
<div data-bbox="279 481 592 60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보고서 작성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ata-bbox="908 481 1278 60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data-bbox="908 710 1278 82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통 보 시·도지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data-bbox="908 947 1278 106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통 보 문화재청장 </div> </div>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처 리 기 간
				30일
치 료 소	① 명 칭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④ 명 칭		⑤ 지정번호	
접 수	⑥ 조 난 일		⑦ 조 난 장소	
	⑧ 조 난 원인		⑨ 신 고 자	
	⑩ 조 난 상황			
완 치	⑪ 완 치 일		⑫ 방 사 장소	
	⑬ 완 치 상황			
폐 사	⑭ 폐 사 일		⑮ 폐 사 장소	
	⑯ 폐 사 원인			
치료 경비	⑰ 청구금액(원)		⑱ 치료 내역	
⑲ 조치 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p>「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의사회장 귀하</p>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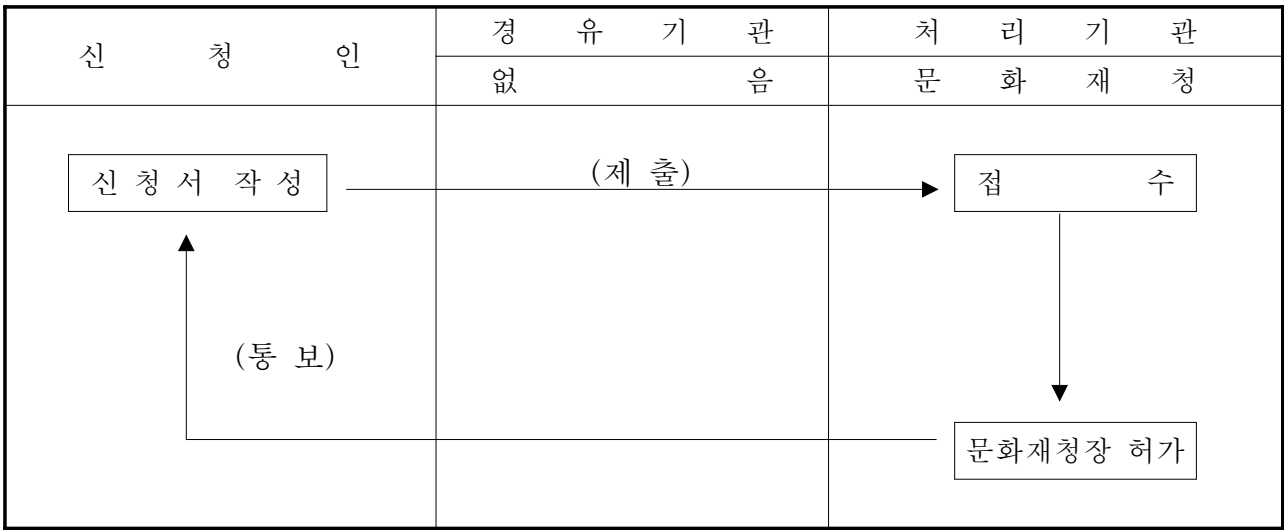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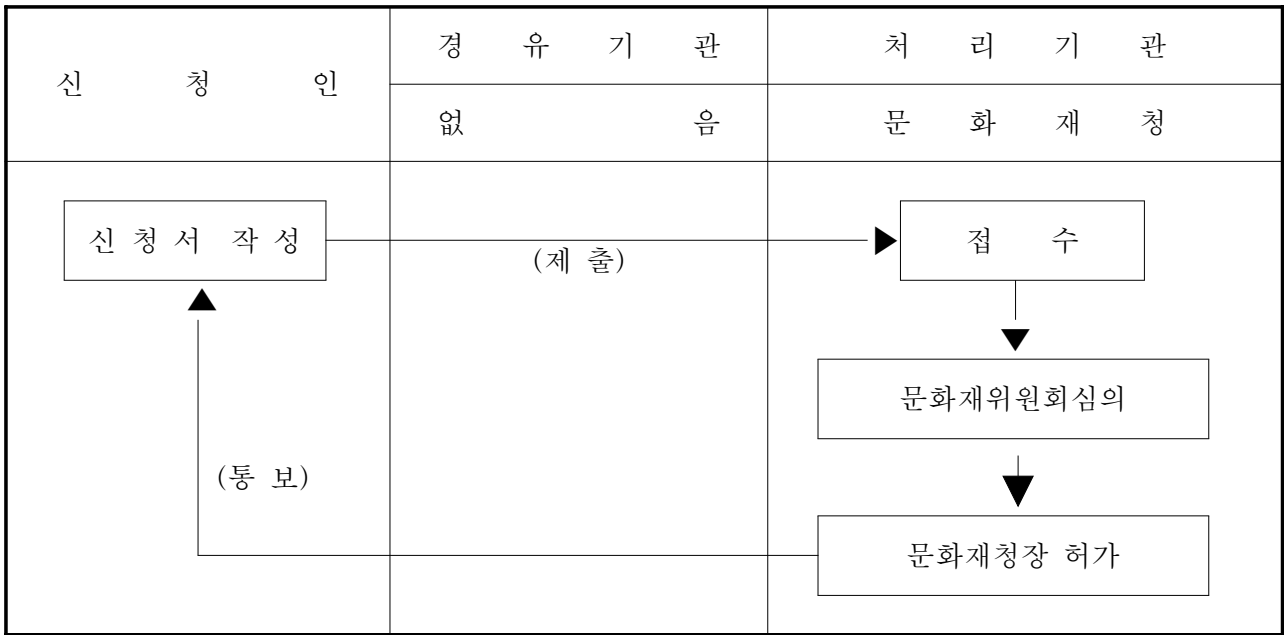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문 화 재	④ 명 칭		⑤ 종 류		
	⑥ 지정번호		⑦ 수 량		
⑧ 수 출 목 적					
⑨ 수 출 대 상 국 가			⑩ 대 상 기 관		
⑪ 수 출 예 정 연 월 일			⑫ 수 송 방 법		
수 출 담 당 자	⑬ 성 명				
	⑭ 주 소				
⑮ 수 출 중 보 호 방 법					
⑯ 수 출 에 관 한 협 약 내 용					
⑰ 그 밖의 사항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재 청 장 귀 하</p>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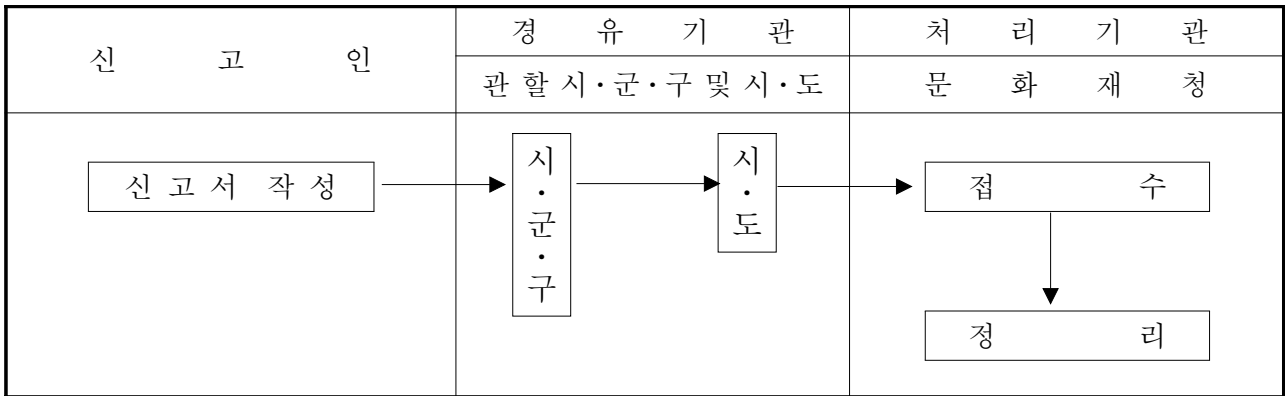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문화재의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등록)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전화번호:)						
관 리 자	신	⑨ 성 명		⑩ 생년월일				
		⑪ 주 소						
	구	⑫ 성 명		⑬ 생년월일				
		⑭ 주 소						
⑮ 사 유				⑯ (선임·해임) 연 월 일				
⑰ 그 밖의 사항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1호·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8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재 청 장 귀하</p>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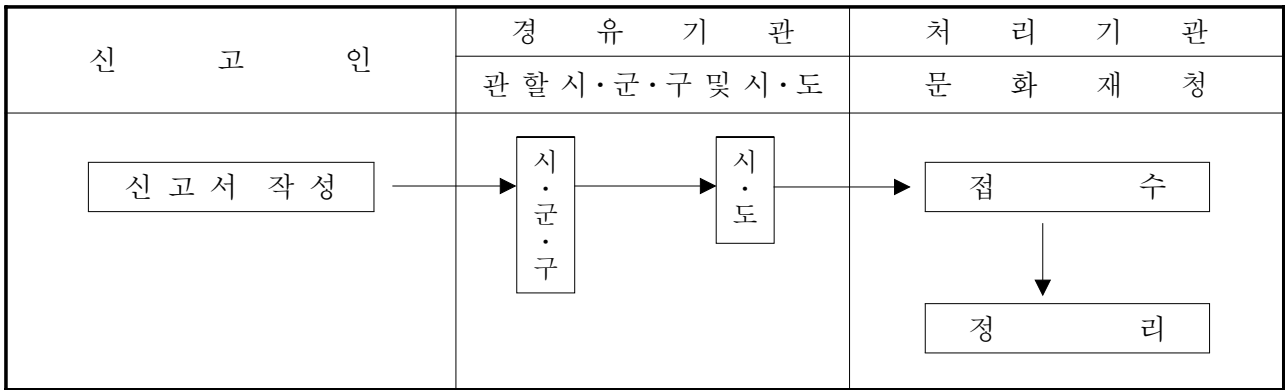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 종류		③ 지정(등록)번호		④ 수량	
⑤ 소재지또는보관장소							
⑥ 보호구역·보호물							
소유자	신	⑦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직업	
		⑩ 주소	(전화번호:)				
	구	⑪ 성명		⑫ 생년월일		⑬ 직업	
		⑭ 주소	(전화번호:)				
⑮ 변경사유				⑯ 변경연월일			
⑰ 그 밖의 사항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38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신)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성명</p> <p>문화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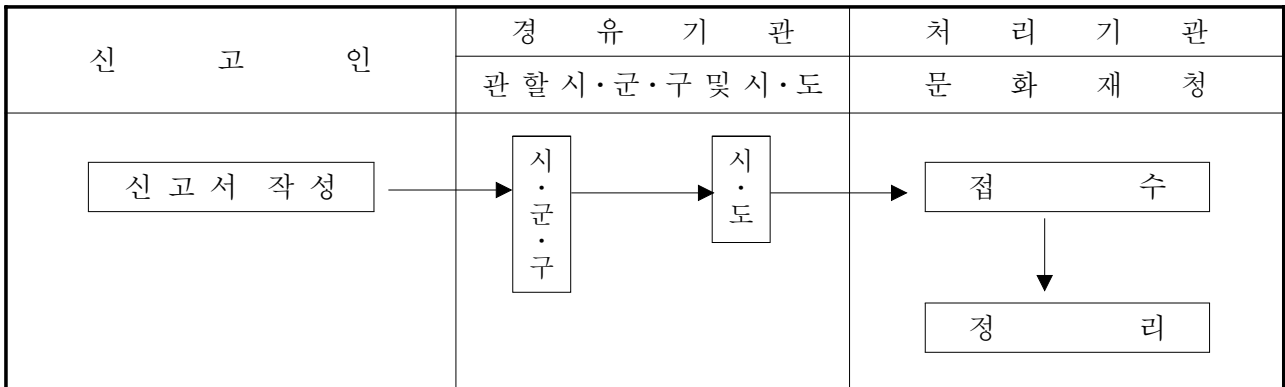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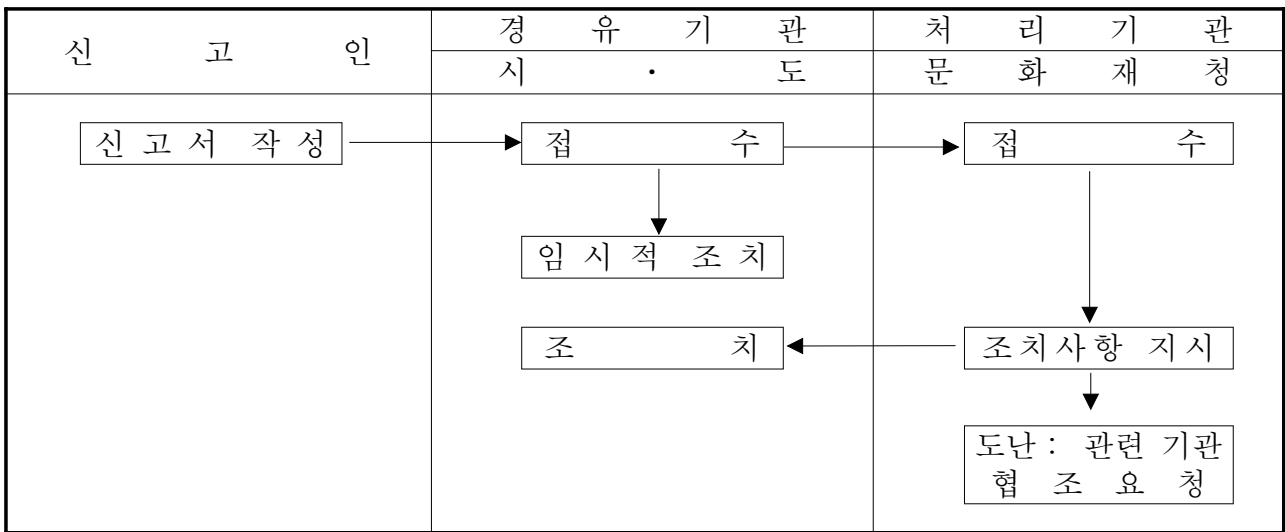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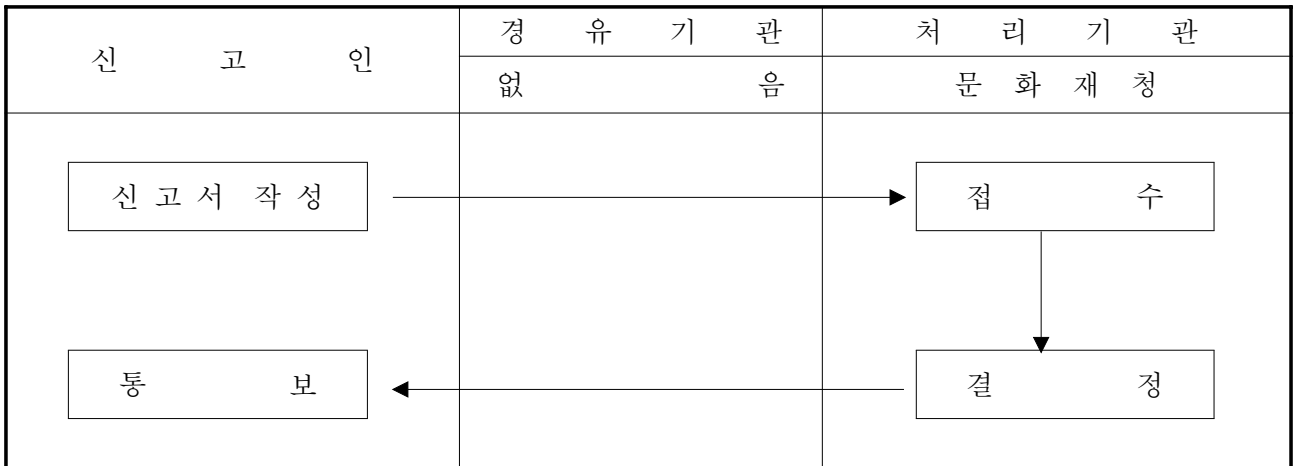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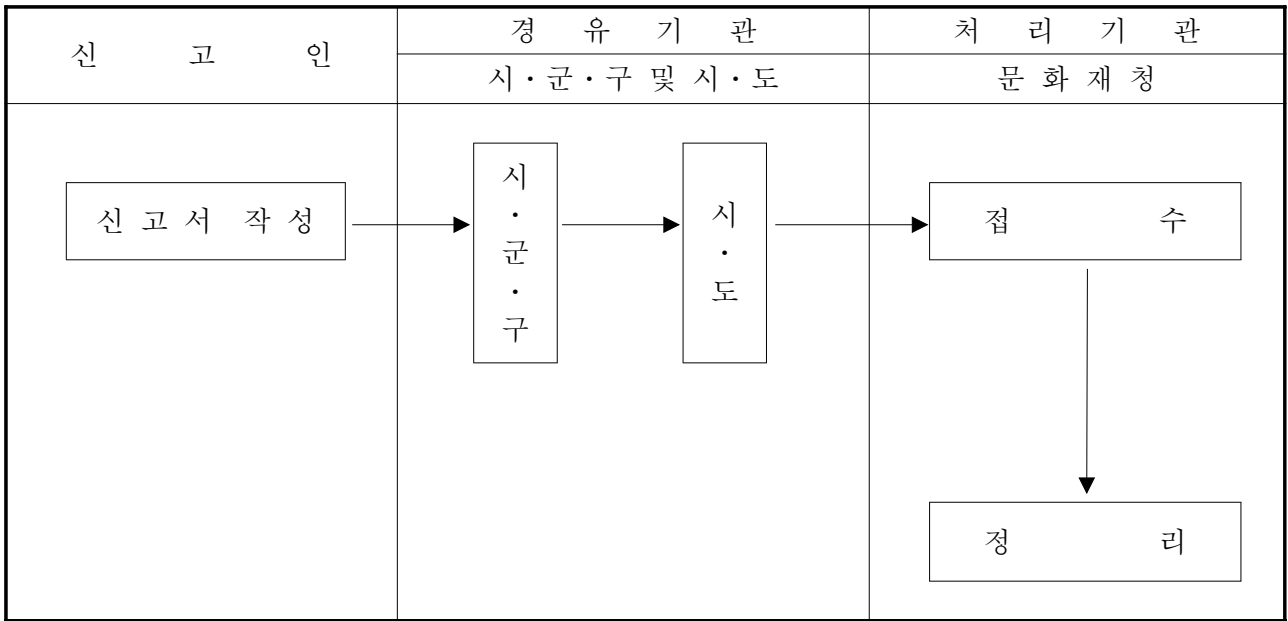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 수 증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 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평가서			
지 정 번 호	제 호	명 칭	
보유자(보유단체)		심사대상자	
심사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평가 의견			비 고
<p>※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심사자 (서명 또는 인) </div>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	1 ~ 3월			
	4 ~ 6월			
	7 ~ 9월			
	10 ~ 12월			
이수 심사·평가계획	시기			
	장소			
	대상			
<p>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청장 귀하</p> <p>※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p> <p>※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실적	1 ~ 3월			
	4 ~ 6월			
	7 ~ 9월			
	10 ~ 12월			
이수 심사·평가 실적	시기			
	장소			
	대상			
<p>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청장 귀하</p> <p>※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p> <p>※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추천서			
피 추 천 인	①교육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담당 분야		
경 력	⑥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⑦기능·예능 공개실적	<input type="checkbox"/>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input type="checkbox"/>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input type="checkbox"/>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input type="checkbox"/>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⑧이 수 사 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⑨그 밖의 사항		
<p>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p> <p> 년 월 일</p> <p>추천인 (인)</p> <p> 문화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 1부</p> <p>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의 전수 교육 조교로서 문화재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의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별지 제4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선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⑤ 보유 기능·예능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⑦ 생년월일	⑧ 주 소	⑨ 발급 구분	⑩ 선 정 연월일	⑪ 발 급 연월일	⑫ 기록자
		③ 지정번호	④ 명칭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m²]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문화재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지정일			해제일		
구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호물					
부속(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점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유					
내용 (연혁, 유래, 전설)					
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	--	-----	--

--	--	--	--

제 목		종 류	
-----	--	-----	--

--	--	--	--

중요무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건조물문화재(목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구역)	m ² (m ²)
구조·양식			건립 연대	
소유자		주소		연락처
관리자		주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기단부			
	축 부			
	지붕부			
	단 청			
	기 타			
조사자의 견				
조사 일시: 조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임야도·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세부 점검 내용			
기 단 부	기 단		
	계 단		
축 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창방 등 수평재		
	벽 체		
	창호/난간		
	공 포		
지 붕 부	도리·보 등 가구재		
	천장/단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 청	벽 화		
	단 청		
기 타			
부대시설	담장·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 수목		
	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 화 기	옥외 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세부 점검 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이 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 시설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사적 정기조사서

사적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																
문화재명:						분 류:										
일반 현 황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지정면적		보호구역 면적				영향검토범위									
	소유 주체															
	지정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보호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 %		㎡ %		㎡ %				㎡ %		㎡ %		㎡ %	
문화재 개요																
입 지 현 황	문화재구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	생산	계획	농업진흥	보전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									예		아니요				
	사적의 입지															
	산간		평야		해안·도서			시가지		공업지대		기타				
	조사자 의견															
	문화재구역															
	영향검토 구역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관리단체									
담당기관		부서/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								있다	없다
발굴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발굴 내용			발굴단체		예산(천원)		
정비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공사 내용			공사업체		예산(천원)		
사적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있다	없다
사적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									
전시관·박물관		안내 설명소		홍보물		문화재 해설사		기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조사자 의견									
조사일					조사자				

현 황 사 진	

도면 현황(용지 크기 A3)

사적 정기조사서-2(공통-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현황									
소화기		소화전		소방차		고가수조		저수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소화펌프					화재경보기				
전동기		엔진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					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m				
소방시설 유지·관리 현황									
사적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								있다	없다
사적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문화재가 있는가?								있다	없다
사적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								예	아니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				
예		아니요			원				
조사자 의견									
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				
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					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				

현 황 사 진	

사적 정기조사서-3(세부항목-건조물)			
주변환경 특성			
배수/습기		주변수목	
일조/통풍		진동/소음	
기타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			
건조물		동	부대시설 동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 조 물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 대 시 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현 황 사 진	

사적 정기조사서-4(세부항목-근대건축)					
구분	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부	건물 전체의 부동 침하 현상	있다	없다		
	바닥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있다	없다		
구조부	슬래브, 보, 기둥, 벽체의 균열	있다	없다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	있다	없다		
	외벽 벽돌 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있다	없다		
마감	외장	외벽 마감재 탈락	있다	없다	
		외벽의 백화 현상	있다	없다	
		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	있다	없다	
	내장	내부 마감재의 손상 유무	있다	없다	
		내부 창, 문의 작동 상태	있다	없다	
방수	옥상 ROOF DRAIN의 상태	있다	없다		
	누수되는 곳의 유무	있다	없다		
기타	옥상과 파라펫의 균열	있다	없다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현상	있다	없다		
	외벽의 전도 위험 부위	있다	없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현 황 사 진	

사적 정기조사서-5(세부항목-성곽)			
구분	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 내·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	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있다		
	없다		
여장 및 기타	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여장의 개석이 탈락·파손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사적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시설명	규모 및 양식	점검내용
성 내 시 설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 대 시 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현 황 사 진	

사적 정기조사서-6(세부항목-기타)				
사적의 유구 정비 상태				
공통사항	사적 유구 정비 현황			
	정비	유구 정비 내용		조사자 의견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미정비	사적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			
석조물이 있는 경우				
세부사항	유형	훼손 내용		
	초석 · 비석 · 석물 · 고인돌 · 선돌 · 기타			
	사적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 대 시 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현 황 사 진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보관 장소			수 량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보관 장소			
	신고사항 이행 여부			
	수량 확인			
	보존 상태			
	보존시설			
	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세부 점검 내용				
보관 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도·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 여부	보관 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 진행 정도			
	보수·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 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 관람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천연기념물(동물)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구역)	m ² (m ²)	
소유자		주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번식(등록) 개체 수				
	지정종 개체 수				
	모색별 개체 수				
	입지 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 수 (암·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수 구분)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기타				
부대시설	치료시설 (치료사·방 사장 등)		배수시설	
	안내판·경고 판		보호·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구역)	(m ² m ²)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생육 상태				
	입지 환경				
	병충해 발생				
	재해/재난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입지 환경 (성토·절토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 환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천연기념물(지질·광물)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구역)	m ² m ²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상태			
	훼손·변형			
	식생·생물			
	지형			
	기타			
조사자의 견				
조사 일시: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변형			
식생·생물			
지 형			
수 환 경			
그 밖의 사항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명승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구역)	(m ² m ²)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식생·동물				
	지형·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 요소 등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면 변경 등)				
식생·동물				
지형·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구성요소 등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지정번호 (명 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지정 연월일		
성 명		인정 연월일		
보유단체명	대표자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전수 교육			
	이수생 관리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세부 점검 내용	
전수 교육 현황	
이 수 생 관리 현황	
전 수 생 관리 현황	
전승지원금 관리 현황	
전승활동 현황	
특기사항	

(앞쪽)

제 호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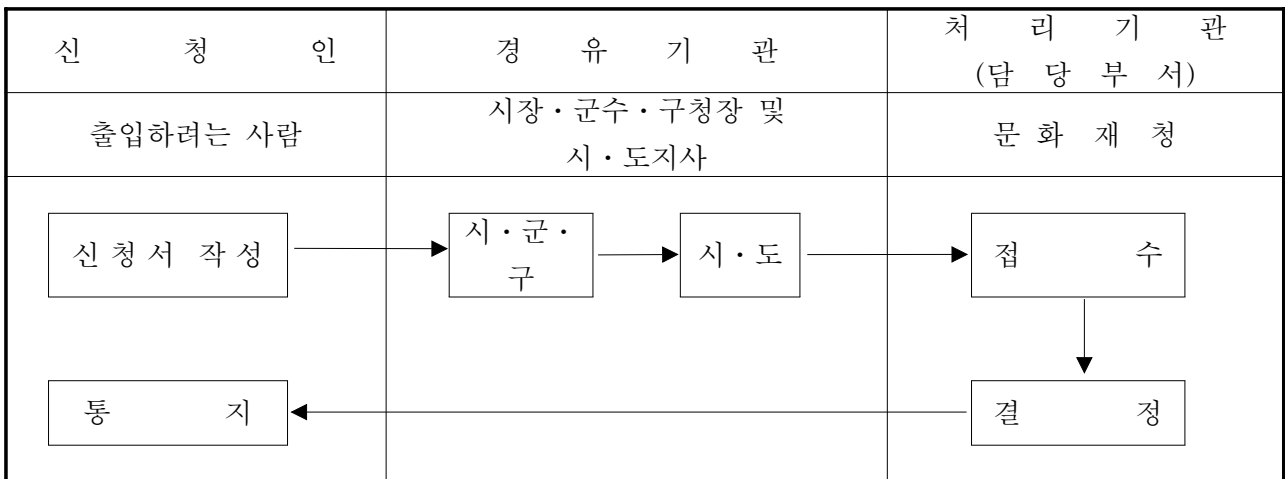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국 비	문화재청	
	그 밖의 기관	
지방비(도비, 시비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문 화 재 청

수신자

제 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문 화 재 청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여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연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군·구명	지정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호	문화재명												

년 월 일

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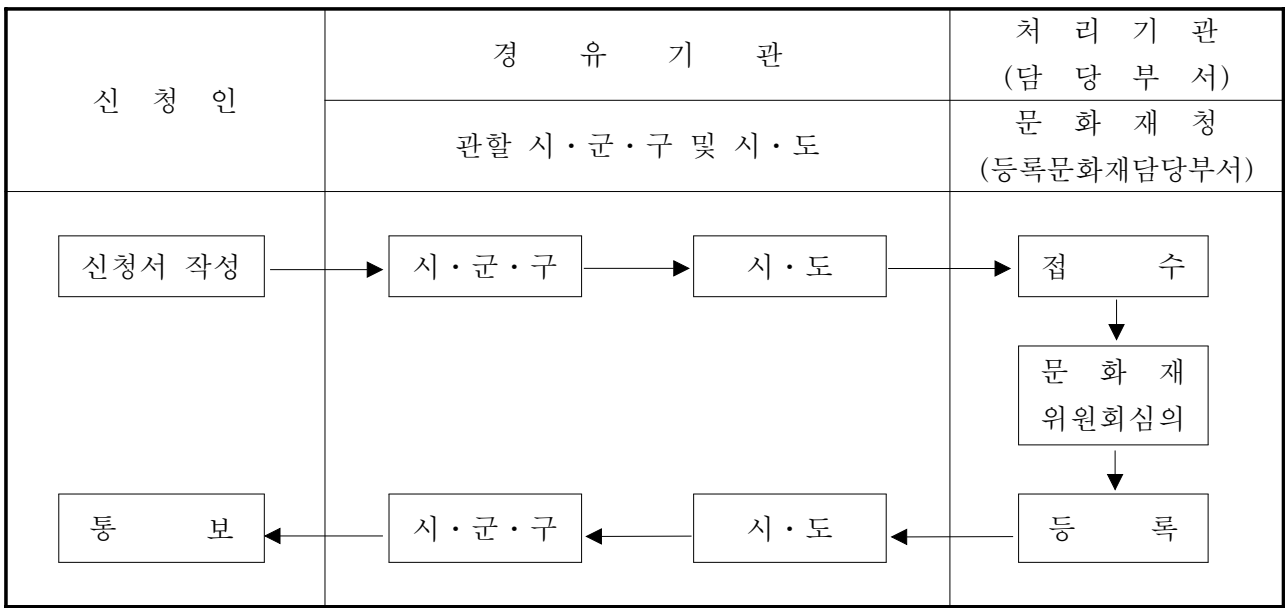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등록문화재 대장

등록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등록일			말소일	
구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호물				
부속(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점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유				
내용 (연혁, 유래, 전설)				
현황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재명 □□□□□ 제 00호 □□□□□

등록 현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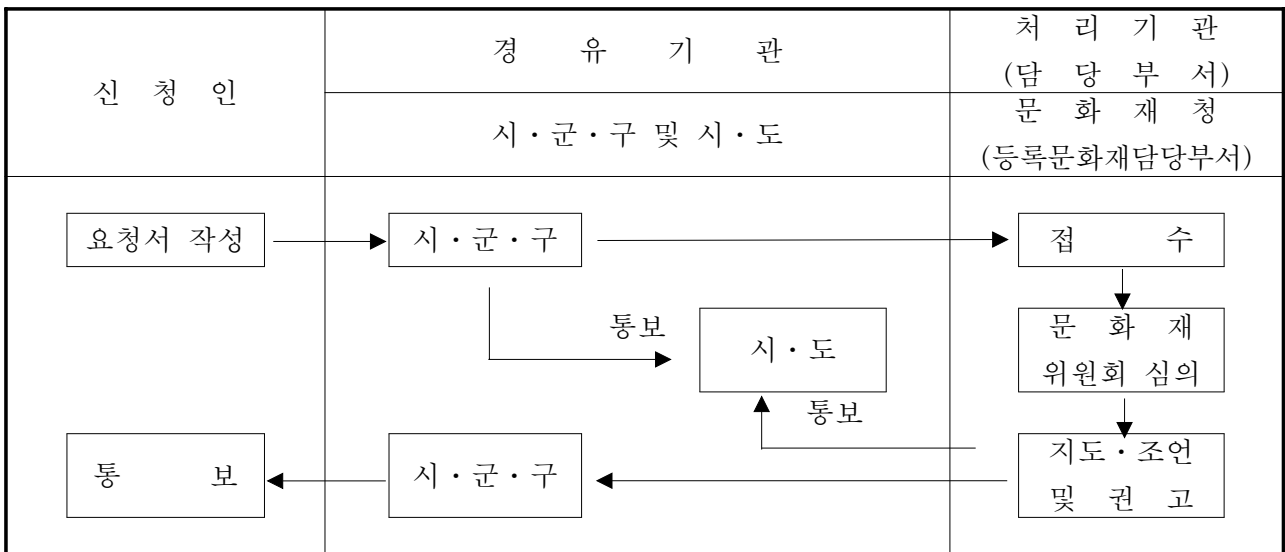
--	--	--	--

제 목		종 류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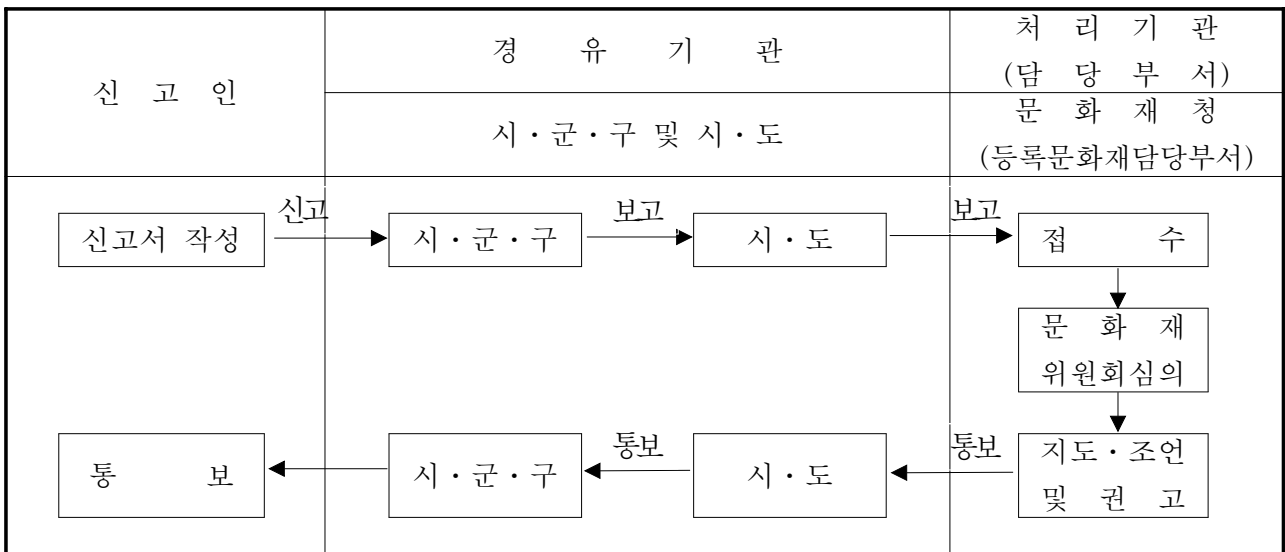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등록문화재 제 호

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p>※ 주의사항</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3.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					
보 고 자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번호:)			
④문 화 재 명 칭	⑤종류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 규 격	⑨보관장소				
⑩ 반 출 목 적					
⑪ 반 출 국 가			⑫보 험 방 법		
⑬ 반 출 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⑮성 명				
	⑯주 소				
⑰ 반출중보호방법					
⑱ 반출에 관한 협약 내 용					
⑲ 유 물 상 태					
⑳ 점 검 자			점 검 일	20 . .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문 화 재 청 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보험증서 사본 1부</p> <p>2. 허가 목록 1부</p>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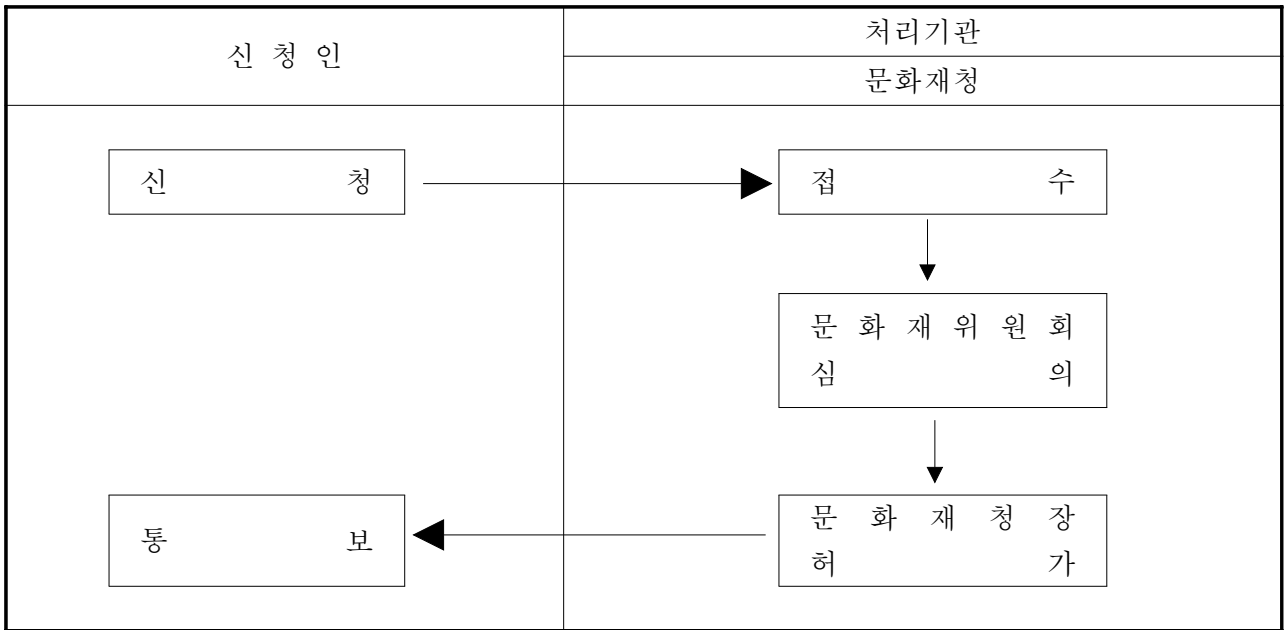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 청 단 체	①단체명				
	②주 소	(전화번호:)			
③문 화 재 명 칭					
④종 류		⑤수 량		⑥취득경위	
⑦규 격		⑧보관장소			
⑨목 적					
⑩반 출 국 가					
⑪보 험 방 법					
⑫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⑬성 명				
	⑭주 소	(전화번호:)			
⑮반출중보호방법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문 화 재 청 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취득 경위서 1부</p> <p>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p> <p>3. 법인 인증서 1부</p> <p>4.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p> <p>5. 보험증서 사본 1부</p> <p>6. 전시계획서 1부</p> <p>7. CITES(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 (해당할 경우) 1부</p>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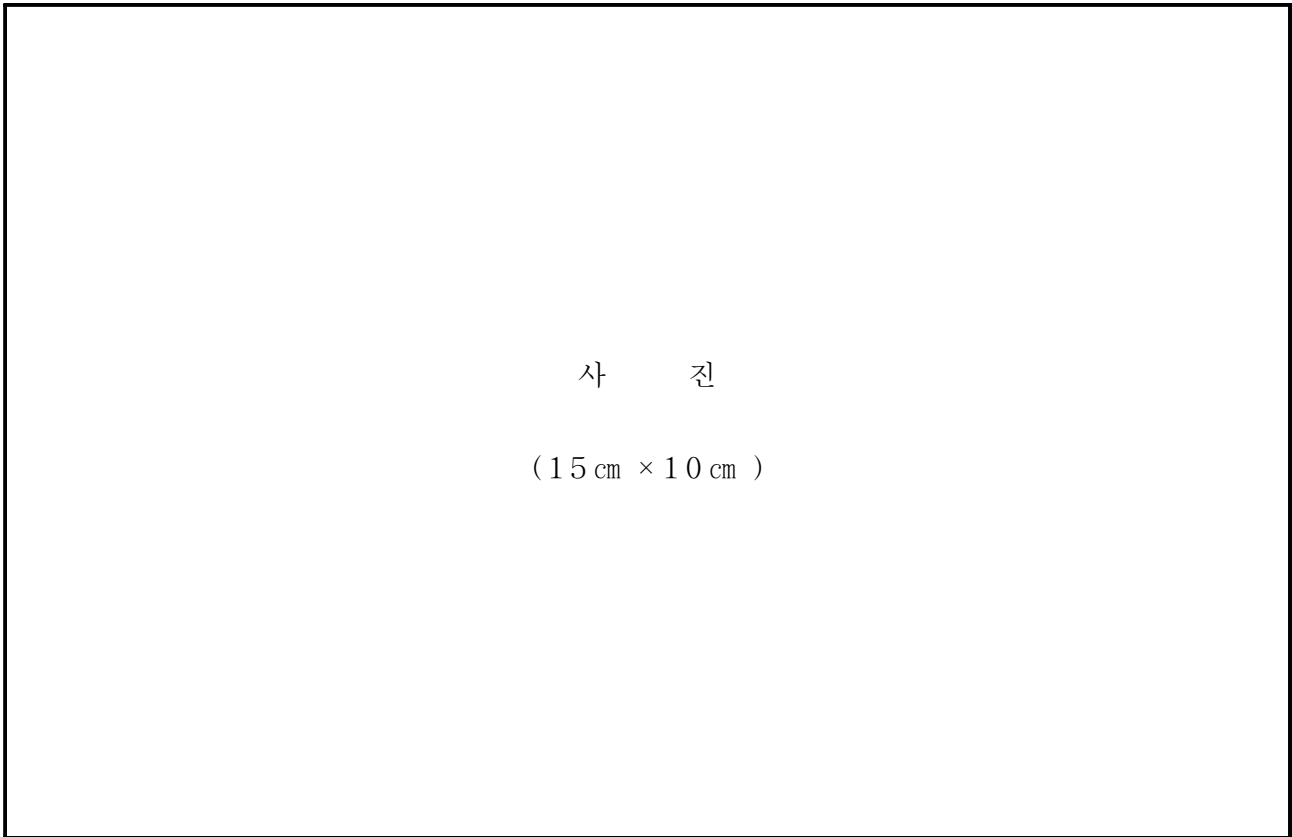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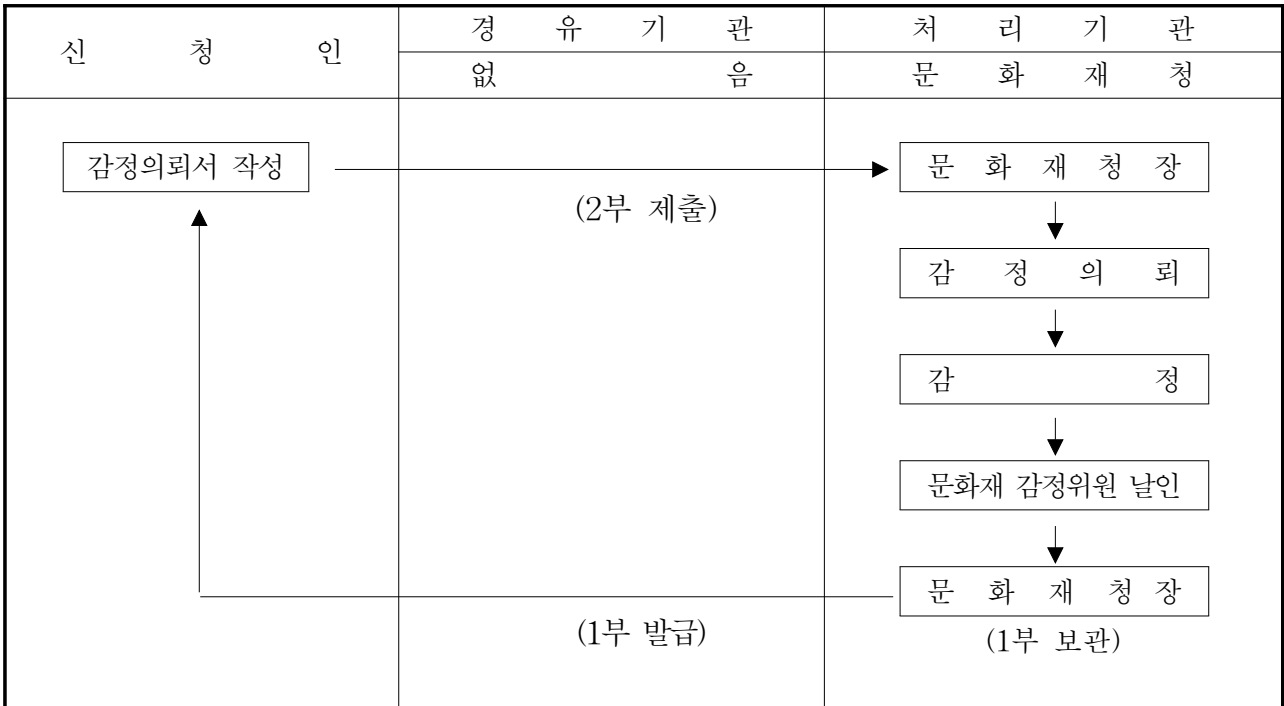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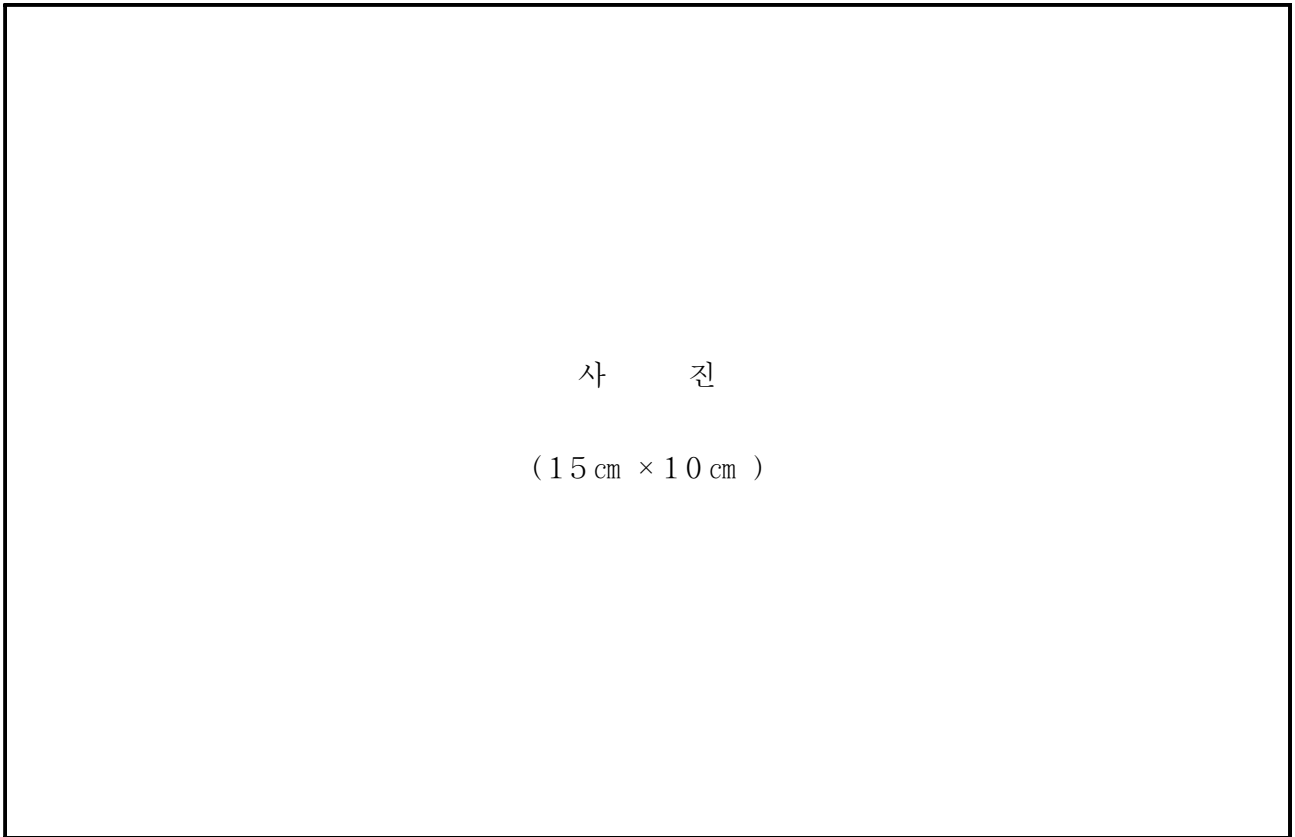
문화재 감정 의뢰 및 회보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감정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④명 칭		⑤종 류	
	⑥규 격		⑦수 량	
	⑧보 관 장 소			
위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니 그 결과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1. 감정 대상물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뒤쪽 첨부)				수 수 료
				없 음
⑨ 제 작 연 대		⑩ 작 자		
⑪ 감정의견				
⑫ 문화재 가치				
위(별첨) 문화재에 대한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문화재 감정위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직인				
※ ⑨·⑩·⑪·⑫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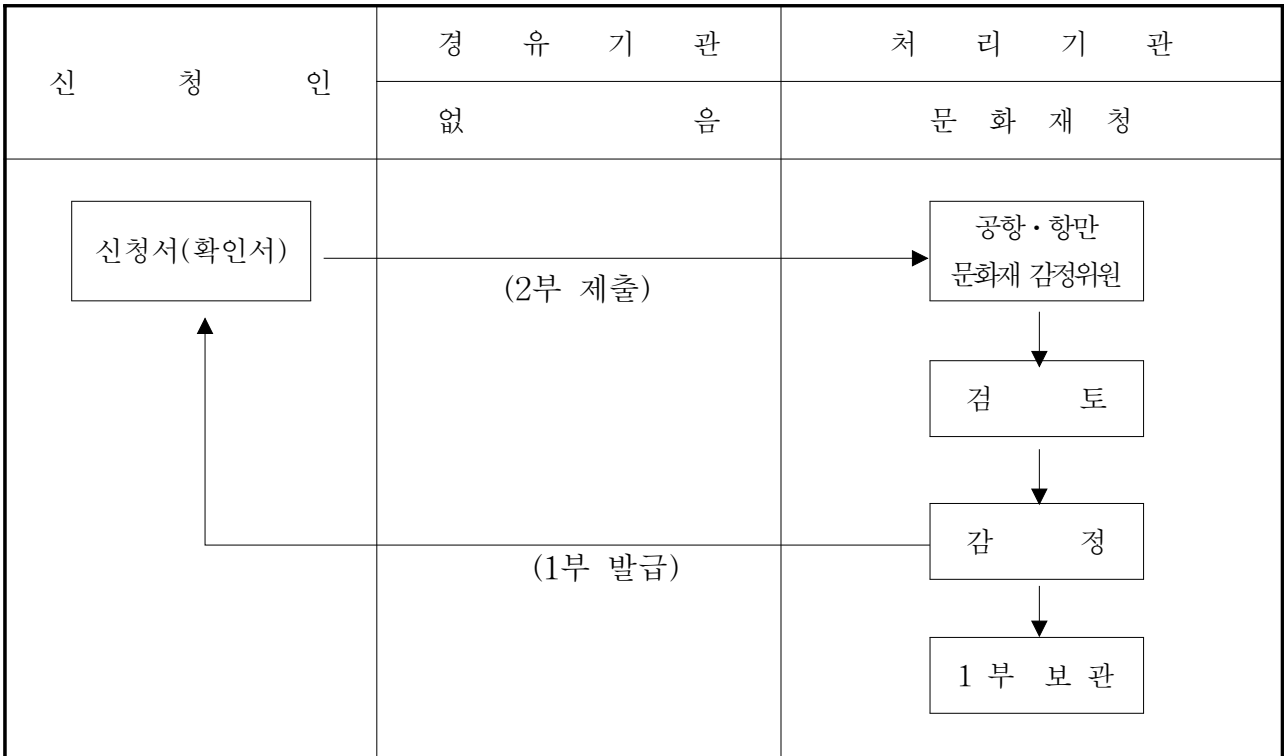


이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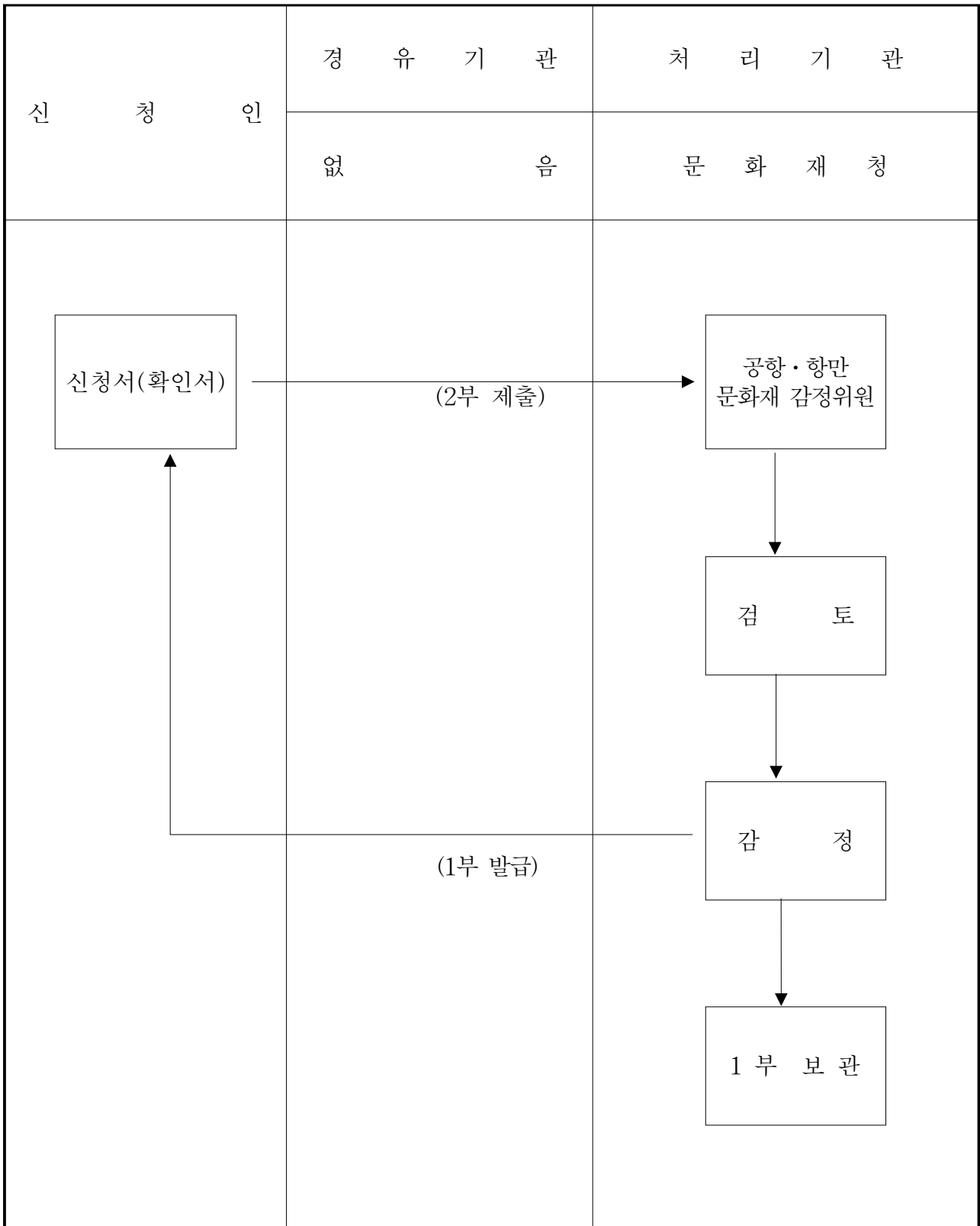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⑥품 명	⑦수 량	⑧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⑨ 문 화 재 가치 유무	⑩ 감정필증번호

※ ⑧·⑨·⑩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쪽)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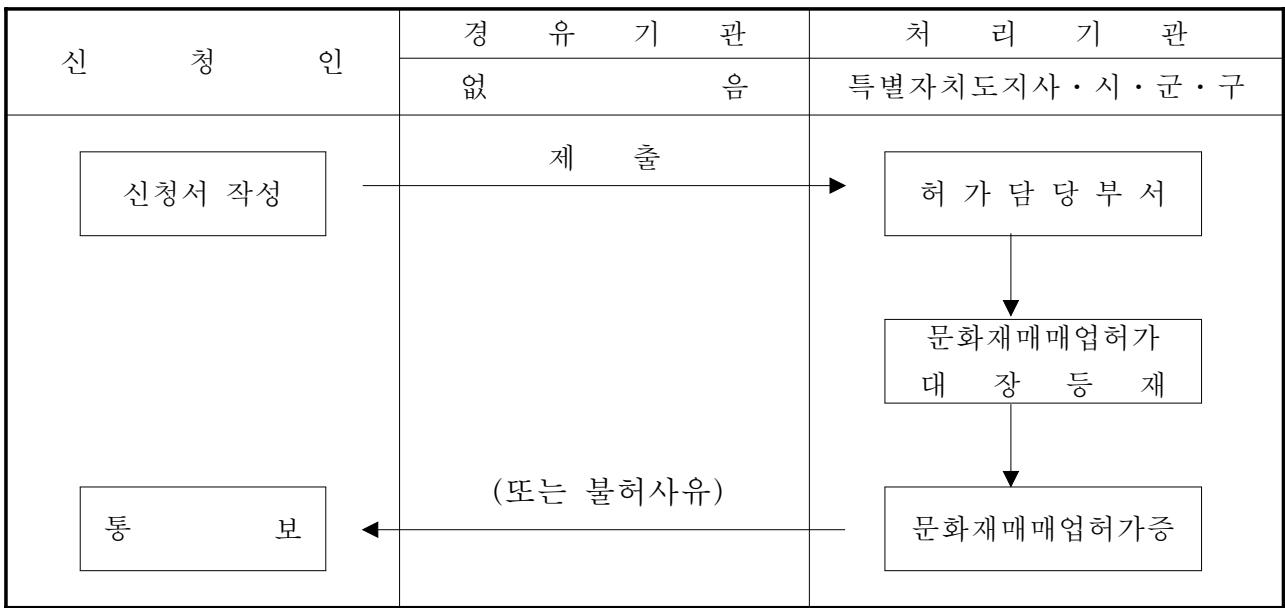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관명				주소				
	관리부서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급감독기관				
관리대상 문화재 총괄 현황	소유별	국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유	건		시·도지정	건			
		사유	건		비지정	건			
문화재 관리시설 현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m ²)							
		향온향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m ²)							
		향온향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화재 현황	유형별 수량 (소장기관 분류기준 적용 가능)	회화류	건	근대매체	건				
		조각류	건	고고자료	건				
		공예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적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문서	건	민속문화재	건				
		서간류	건	외국 문화재	건				
		서각류	건	기타	건				
	관리상태 확인	확인주기		최종 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사자의 견									
조사 일시: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소장 문화재 목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대표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번호:)	
<p>「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허가번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진 (3cm×4cm)
제 호					
① 상 호					
② 허가 연월일					
③ 영업장소	(전화번호:)				
④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⑤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인
⑥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⑦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m²]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① 상 호			
② 영업장소			
③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④ 준수사항 및 기타		○ 준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신고의무: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및 제79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10px; text-align: center;">직인</div> </div> <p>※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상 호				
⑤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고서 작성</div>	제 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결 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문화재청 보고</div>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 신고 대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뒤쪽)

문화재매매장부			
번호	문화재명	번호	문화재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영업장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④ 허가 번호	제 호	⑤ 허 가 연월일		⑥ 상 호	
검인 신청 장부	⑥ 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p>「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허가번호	제 호		② 허가 연월일		
③ 상 호					
④ 영 업 장 소					
⑤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⑥ 폐 업 일					
⑦ 사 유					
<p>「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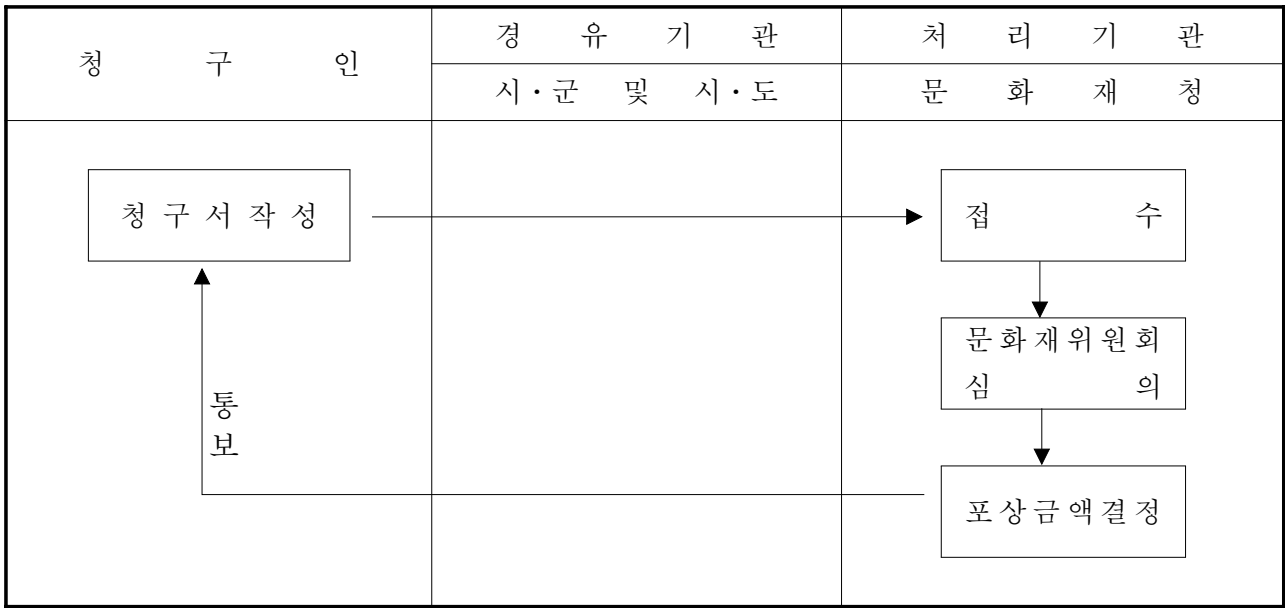
신 고 인	경유기관 없 음	처 리 기 관 시·군·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신고서 작성</div>	제출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 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div> </div>

접 수 번 호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 구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청 구 원 인	사 건 명			
	법원(기소)의 관할			
	공 적 내 용			
	몰 수 문 화 재			
	처 분 결 과			
	사 건 종 결 일			
<p>「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제61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94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구성)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6, 2010.12.31>

② 삭제<2010.12.3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0.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0.12.31]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08.10.20, 2009.4.6, 2010.12.31>

1. 삭제<2009.4.6>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6. 삭제<2009.4.6>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10.12.31>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신설 2008.9.25>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8.9.25]

제8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9.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개정 2008.9.25>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9.25, 2010.12.31>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9.25>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08.9.25]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08.9.25>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③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4.6, 2010.12.31>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0.12.31>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08.9.25, 2010.12.31>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제17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23호, 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2호, 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412호, 2009.4.6>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94호, 2010.12.31>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33 제2조(정의) 333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333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334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335	제1조(목적) 333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333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334	제1조(목적) 333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334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35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338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339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340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341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335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338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339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340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335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39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340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342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345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342 제9조(허가 취소 등) 342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344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345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3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346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347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348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349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 346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347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348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348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349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345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347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348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349 제18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350 제19조(경찰서장 등에게 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351 제20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352	제17조(발견신고) 349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352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352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352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353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353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354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354	제10조(발견신고 등) 349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352
제21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354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354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354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354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355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355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356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357

제6장 보 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	359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360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360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360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61

제7장 벌 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362
제32조(가중죄)	363
제33조(미수범)	364
제34조(과실범)	364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364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355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355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357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359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	360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 · 관리)	360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360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60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355
-----------------------	-----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356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364 제37조(양벌규정) 365 제38조(과태료) 365		
부 칙 366	부 칙 366	부 칙 366
	시행령 별표 369	시행규칙 별표 377
		시행규칙 서식 39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p> <p>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p>	<p>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p> <p>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p> <p>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河床)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p>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p>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속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라.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마.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솜아베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p> <p>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p> <p>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盛土: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원
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형 보존 2. 이전(移轉) 복원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p>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형 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 2. 이전(移轉) 복원: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관이나 인근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복원(모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보존 및 이전 복원: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 보존·이전 복원) 결과 보고서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 보고서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p> <p>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p>	<p>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p>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p> <p>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p> <p>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p>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p>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除土: 흙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p>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p>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 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p>	<p>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p>	<p>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1. 매장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p> <p>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 매장문화재의 외부, 매장문화재의 주변</p> <p>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p> <p>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p>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p>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등에게 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

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p> <p>제20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p> <p>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p> <p>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p> <p>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p>	<p>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1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p> <p>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p> <p>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 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p>	<p>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p>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p> <p>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p> <p>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 	<p>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p> <p>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p>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p>

호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p> <p>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p> <p>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p> <p>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발굴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발굴 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p> <p>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제6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p>	<p>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p>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p>	

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이 경우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사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p>		

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한 자가 그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②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1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p> <p>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부 칙 <제10001호,2010.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 3 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 4 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p> <p>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부 칙 <제22649호,2011.1.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관리한다.</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p>	<p>부 칙 <제78호,2011.2.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	--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p> <p>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p> <p>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별표 5)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제2조 관련)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변(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 가. 얼음골, 풍혈
 -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증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증거의나 증거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증거의나 증거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p>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p>	<p>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p>	<p>2년</p>
<p>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p>	<p>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p>	<p>2년</p>
<p>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p>	<p>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5호</p>	<p>2년</p>
<p>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p>	<p>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6호</p>	<p>6개월</p>
<p>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p>	<p>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7호</p>	<p>2개월</p>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II.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4. 별표 4 I. 일반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별표 4)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구 분	지표조사 실시시기
1. 도시 및 농 어촌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p>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p> <p>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p> <p>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p> <p>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p> <p>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p> <p>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p> <p>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p>

	<p>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p>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p>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3. 에너지 개발</p>	<p>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p>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p>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p>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4. 항만의 건설</p>	<p>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p>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5.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6. 수자원의 개발	<p>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p>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8. 공항의 건설	<p>「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p>「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0. 공유수면의 매립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11. 관광단지의 개발</p>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p>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p>다.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p>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12. 특정지역의 개발</p>	<p>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평택시개발사업 중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p>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3. 체육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 계획 수립 완료 전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16. 그 밖의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유물 내용
	도면	유구 및 유물의 실측
		유구 및 유물의 편집
		축소비율
	사진	유적 및 유구의 사진
		유물 사진
		사진의 편집
	맺음말	결론 및 분석
편년(編年)		
요약		
초록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조사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2. 육상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3. 수중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p><문화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p><수중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4. 수중발굴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p><문화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p><수중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p>육상발굴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향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p>육상지표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1명 ○ 준조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향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p>수중지표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문화재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 준조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향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 중 발 굴 조 사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3명(문화재 1명, 수중 분야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온·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조사기관의 상근직 조사 요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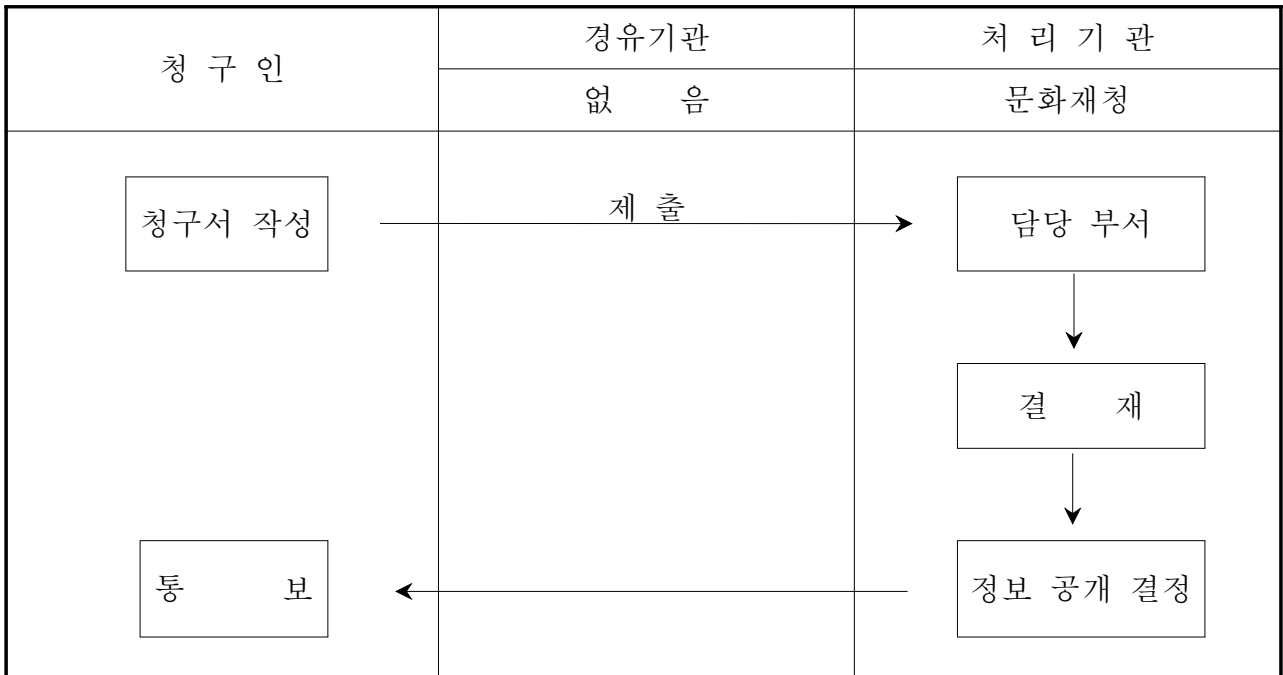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처리됩니다.

(뒤쪽)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허 번	가 호	제0000-000호	매 장 문 화 재 명				
발 굴 유 형	<input type="checkbox"/> 표본 <input type="checkbox"/> 시굴 <input type="checkbox"/> 정밀발굴		발 굴 사 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 재산포지 면적	m ²	발굴 면적	m ²	
발굴조사 기관명			조 사 단	조사단장			
발굴 기간	. . . ~ . . .			책임조사원			
현 장 조 사 일	일	발굴 비용		원	조사원		
					준조사원		
출 토 유 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출 토 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보고서 제 출 계획	<input type="checkbox"/> 2년 이내 발간 <input type="checkbox"/> 약식 보고서로 대체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약식 보고서[트렌치(trench)별 유구(遺構)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 및 관련 사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문화재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문화재
- 발굴(현상변경) 면적: 실제 발굴(현상변경) 면적을 적습니다.
- 소재지: 발굴(현상변경) 대상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 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현상변경) 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현상변경)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조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총장을,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은 연구원장을,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 현장조사일수를 적고,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⑦ 발굴비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문화재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 조사 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예) 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인 00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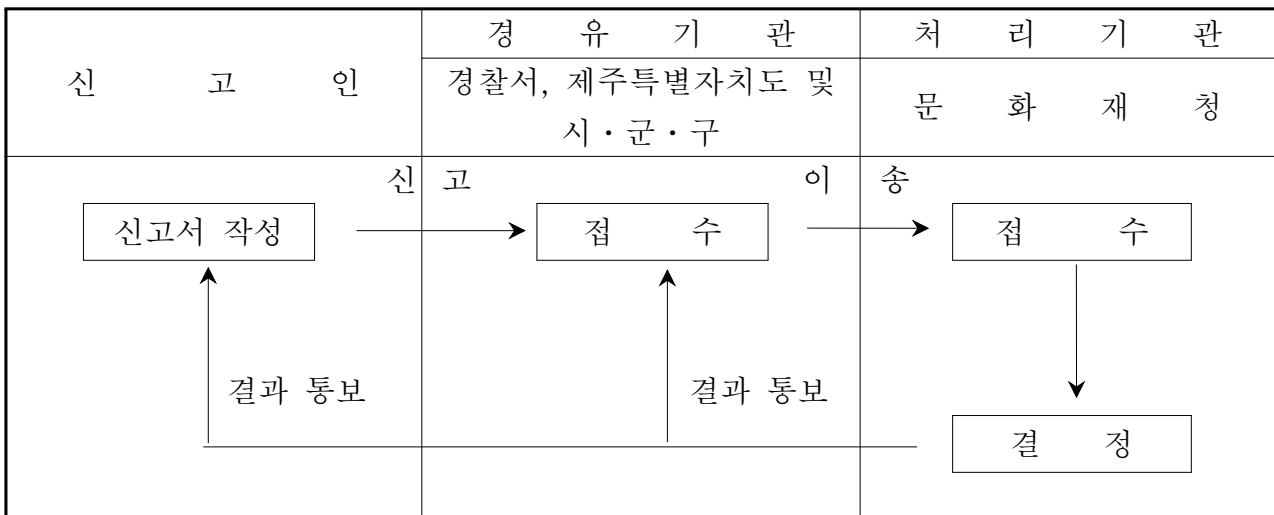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지표조사 협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의 내용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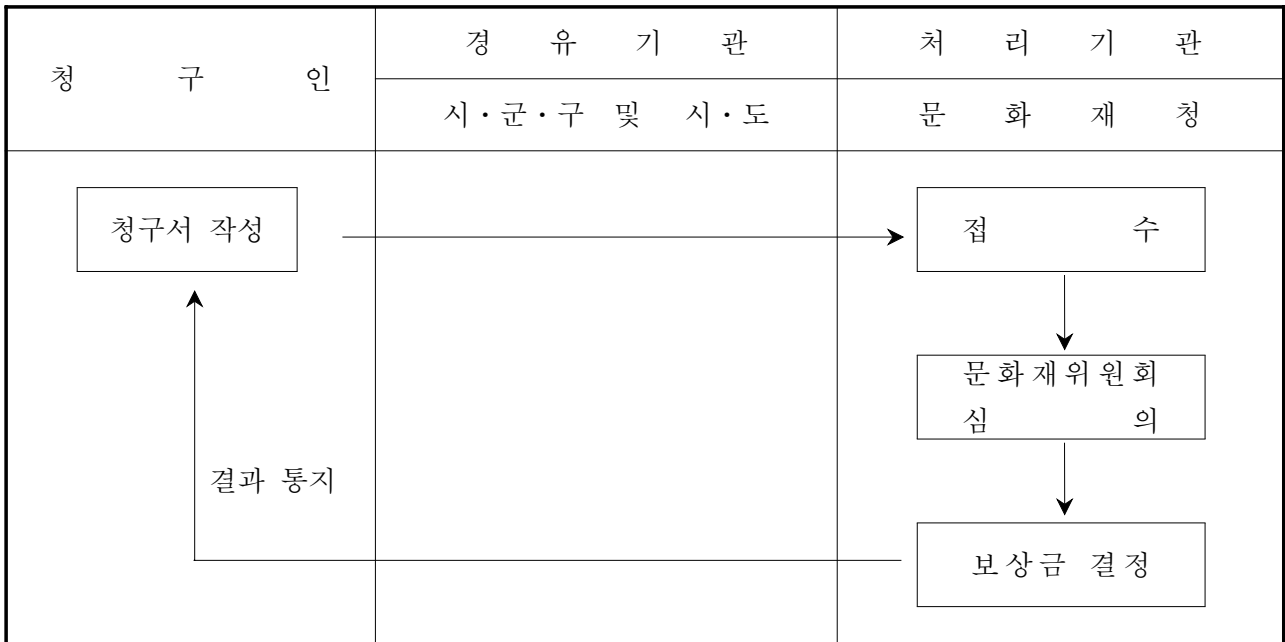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작성요령

- ① 신고인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 ② 매장문화재 종류
 - 도기·자기, 지·의류, 철기, 석기, 목기, 고분, 화석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 ③ 명칭: 발견된 문화재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
- ④ 수량: 발견된 문화재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자기-3점 / 철기-2점 등)
- ⑤ 재료: 발견된 문화재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 돌, 철, 나무, 종이,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 구조·형태
 - 발견된 문화재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
- ⑦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부정형(不定形)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
- ⑧ 현재 상태: 표면의 훼손 상태,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
- ⑨ 발견 일시: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 ⑩ 발견 장소: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및 위치)를 적습니다.
- ⑪ 유래 또는 전설: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口傳)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⑫ 발견 경위: 문화재를 발견하게 된 배경, 방법, 사유 등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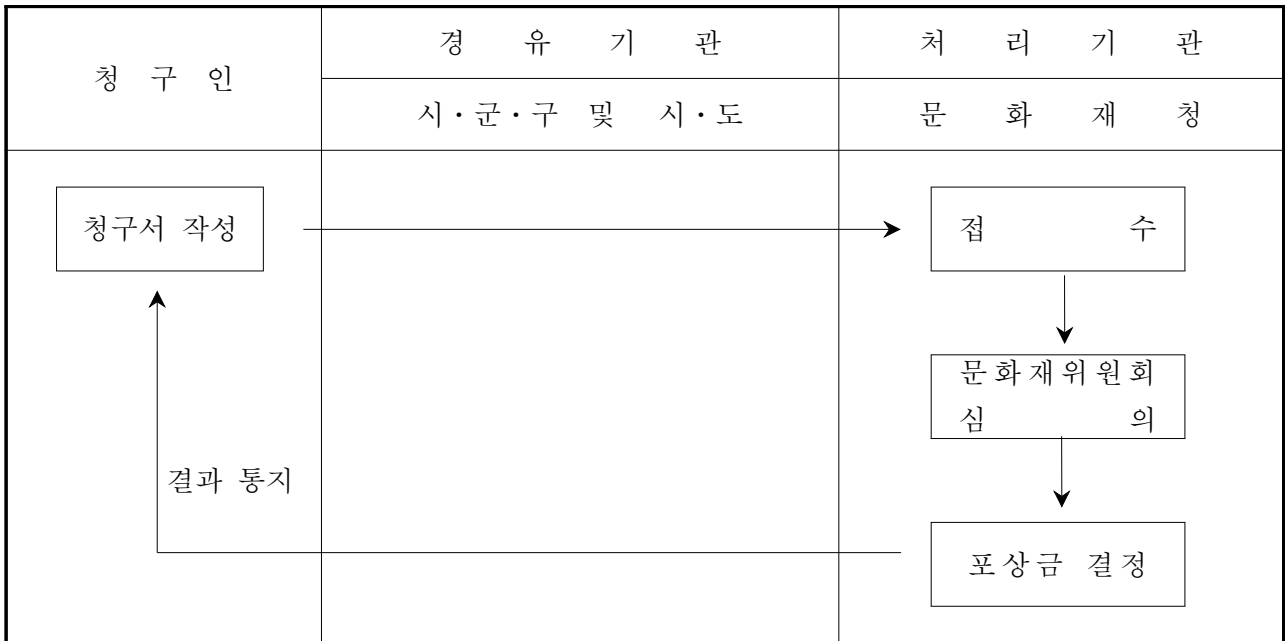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조사기관 등록증			
기관명		기관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423 제2조(정의) 423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426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426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427 제6조(성실의무) 428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429	제1조(목적) 423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423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426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427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427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429	제1조(목적) 423 제2조(성실의무) 428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429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432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432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429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430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430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431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429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43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433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434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34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433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433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434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434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434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436 제8조(변경신고 등) 437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438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438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439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439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439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440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440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443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440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444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444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445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445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446 제23조(준용) 447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445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447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448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449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449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449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450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453
제31조(검사 및 인도)	453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453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454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55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456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457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457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458
----------------------	-----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447
제16조(하도급의 통보)	448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453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454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456
제20조(감리대상 등)	458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459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459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	454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450
제15조(하도급의 통보)	448
제14조(도급 대장)	447

제18조(감리보고서)	458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460

제14조(도급 대장)	447
제15조(하도급의 통보)	448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450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	454
제18조(감리보고서)	458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46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461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461 제41조(감리의 제한) 462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461 제24조(감리의 제한) 462	제20조(감리일지) 460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462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464 제44조(「민법」의 준용) 464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462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463	
제5장 감 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464 제46조(시정명령 등) 465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466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468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468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 466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468
제6장 보 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471 제51조(수수료) 472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473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471	제23조(수수료) 472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474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475

제55조(청문) 479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479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79

제7장 벌 칙

제58조(벌칙) 480

제59조(벌칙) 480

제60조(벌칙) 481

제61조(양벌규정) 481

제62조(과태료) 482

부 칙 483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474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475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479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82

부 칙 483

시행령 별표 487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474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475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476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477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478

부 칙 483

시행규칙 별표 505

시행규칙 서식 5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p> <p>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p> <p>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p> <p>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p> <p>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p> <p>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p>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p> <p>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p>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p>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1.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 	<p>2. 동산문화재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p>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p>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장소 및 접수 기간·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p> <p>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p>	<p>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 ④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p> <p>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p>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p> <p>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p> <p>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p>	<p>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p> <p>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p> <p>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p>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추는 것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p> <p>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등록수첩
 -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p> <p>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들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들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들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p> <p>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p> <p>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p>	<p>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p> <p>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p> <p>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p>	<p>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p>

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p> <p>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

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p>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p> <p>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p>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p> <p>5. 등록증 및 등록수첩</p> <p>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p>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p> <p>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p>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도급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p>	<p>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p> <p>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p>	<p>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p>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

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성금(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 제1항제3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p> <p>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p>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
-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
-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p> <p>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既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p> <p>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p> <p>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p> <p>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p> <p>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既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문화재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문화재수리</p> <p>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p>	<p>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p> <p>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p>	<p>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 (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 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 (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 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p> <p>②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가 제공한 문화재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p>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p>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감리</p> <p>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p>	<p>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p>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1. 상주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10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p>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문화재수리협회</p> <p>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수리업자들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 	<p>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분회(分會)·지회(支會)·위원회에 관한 사항 	

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 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선급금지급보증·하자보수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p> <p>제44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감독</p> <p>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p>	<p>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p> <p>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p> <p>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p> <p>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p> <p>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p>		<p>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p>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p> <p>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p> <p>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p> <p>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14.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p> <p>15.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p> <p>16.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p> <p>17.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p> <p>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p>		

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p>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p>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p>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기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p>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비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p> <p>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p>	<p>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p> <p>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p>

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

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p>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p>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2.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p>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p> <p>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p>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9999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8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7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p> <p>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p> <p>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p>	<p>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은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p> <p>제37조제3항제5호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p>	<p>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별표 12)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p>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p>	<p>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카.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타.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파.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하.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거.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너.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러.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머.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버.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p>	<p>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 무 범 위
1. 보 수 기 술 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 청 기 술 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 경 기 술 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제8조제2항 관련)

종 류	자 격 시 험 응 시 요 건
1. 보수기술자	<p>가. 토목계열학과, 건축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건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p> <p>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마.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바.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p>
2. 단청기술자	<p>가. 미술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p> <p>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마.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바. 산업디자인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p>

종 류	자 격 시 험 응 시 요 건
3. 조 경 기 술 자	<p>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와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p> <p>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와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p>
4. 보 존 과 학 기 술 자	<p>가. 보존과학계열학과, 이학(화학, 생물, 물리 및 지구과학으로 한정한다)계열학과, 공학(자원공학, 지질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금속공학, 제지공학 및 임상공학으로 한정한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와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p> <p>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와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마. 화공 및 화학분석,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 또는 지질 및 기반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바. 화공,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p>

종 류	자 격 시 험 응 시 요 건
5. 식물보호기술자	<p>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와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와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p> <p>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에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p>

비고

1.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자격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며,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기사" 및 "산업기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산업기사를 말한다.
5.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비고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제9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전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종 류		업 무 범 위
1. 한 식 목 공	대 목 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 목 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단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 식 석 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 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 잡 이 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 와 (翻 瓦) 와 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 작 와 공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 식 미 장 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 물 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 각 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 공		옷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 금 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 구 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 경 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 척 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 존 과 학 공	훈 증 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 존 처 리 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 물 보 호 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 측 설 계 사 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 제 및 표 본 제 작 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 사 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 돌 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정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억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 문 문 화 재 수 리 업	조 경 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변와공사업	가. 변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변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나.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다. 전축성(塼築城) 라. 목책성(木柵城)	5년 3년 2년 3년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나. 전탑(塼塔)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년 3년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撒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3) 역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 그 밖의 구조재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3)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마.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3년 2년 1년 1년 3년 2년 1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3년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2) 전축분(塹築墳) 3) 목곽묘(木槨墓) 다. 병풍석(屏風石)	2년 5년 3년 1년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鋪方磚) 2)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혼합토 등	2년 2년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2년 3년
8. 조경·식물 보호·발굴 지정비·벽 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나. 식물 보호 다. 발굴지 정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탕화, 옷칠 등	2년 3년 2년 5년
9. 문화재보호 ·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 위 표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무 범 위
1. 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타.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1. 상주감리원	가. 법 제2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차.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p>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p>		<p>자격정지 1개월</p>	<p>자격정지 3개월</p>	<p>자격정지 6개월</p>
<p>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p>		<p>자격정지 1개월</p>	<p>자격정지 2개월</p>	<p>자격정지 3개월</p>
<p>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p>	<p>법 제47조제1항제4호</p>			
<p>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p>	<p>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p>	<p>자격정지 1개월</p>	<p>자격정지 3개월</p>	<p>자격정지 6개월</p>
<p>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p>	<p>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p>	<p>자격정지 1개월</p>	<p>자격정지 3개월</p>	<p>자격정지 6개월</p>
<p>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p>	<p>자격정지 1개월</p>	<p>자격정지 3개월</p>	<p>자격정지 6개월</p>
<p>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p>	<p>법 제47조제1항제5호</p>	<p>자격정지 6개월</p>	<p>자격정지 1년</p>	<p>자격정지 2년</p>
<p>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p>	<p>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p>	<p>자격정지 6개월</p>	<p>자격정지 1년</p>	<p>자격정지 2년</p>
<p>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p>	<p>법 제47조제1항제7호</p>	<p>자격정지 1년</p>	<p>자격정지 2년</p>	<p>자격취소</p>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8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부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p>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법 제49조제1항제5호</p>	<p>등록취소</p>		
<p>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2호</p>			
<p>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p>	<p>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4호</p>			
<p>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6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7호</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8호</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p>
<p>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4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4개월</p>
<p>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9호</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p>법 제49조제1항제10호</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2)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7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p>법 제49조제1항제11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12호</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13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14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법 제49조제1항제15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2만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만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5천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5천원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라. 문화재감리업	3만원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5천원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문화재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문화재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5
2. 실측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10
4. 도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그 밖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 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1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서식)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V”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cm×4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종목 ② ⑬: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5. 종목번호 ③ ⑭: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성명 ④ ⑯: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⑰: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번호 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주소 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학력 ⑧: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V”표시를 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1. 면제신청 ⑨ 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단,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가. 전 과목 ⑩: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인 경우
 - 나. 일부 과목 ⑩: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 력 증 명 서				처리기간
				즉 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p> <p>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p> <p>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기관명: _____ 주 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_____</p> <p>대표자: 직인</p> <p>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p>			
<p>※ 주의사항: 이 증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같은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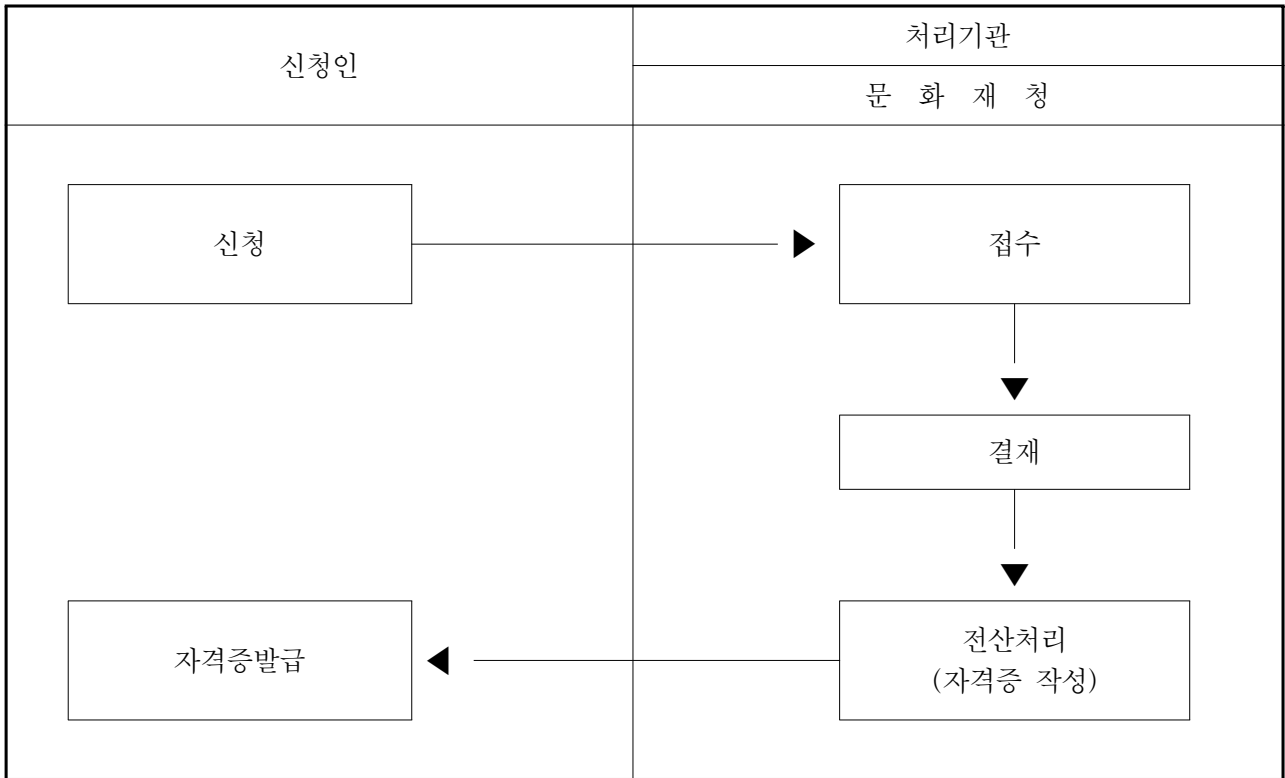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 ①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④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기간을 연·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⑧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해야 하며, 문화재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행정 처분 사항

(3쪽)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기간	처분 내용	처분 사유	기록자

변경 사항

(4쪽)

구 분	변경 내용	기록자	비 고

현 장 경 력

(5쪽)

문화재 수리명	시행청	도급자	공사 기간	기록자	비고

※ 확인 : 시행청

보수교육 이수 현황

(6쪽)

교육 종류	교육 시간	확인 기관	기록자	비고

※ 확인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사 진 (반명합판) 3cm×4cm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자 격 종 목		자 격 번 호		
	자 격 취 득 일		전 화 번 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학 력	학 력 구 분	1. 대학원 2. 대학교 3. 전문대학 4. 고등학교 5. 훈련원 6. 중학교 이하			
	최종 학교명	학 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중퇴)			
근 무 처	상 호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재 지				
보 수 교 육					
기 간	종 류	기 관	수 료 증 번 호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변경 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자 인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자격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발급일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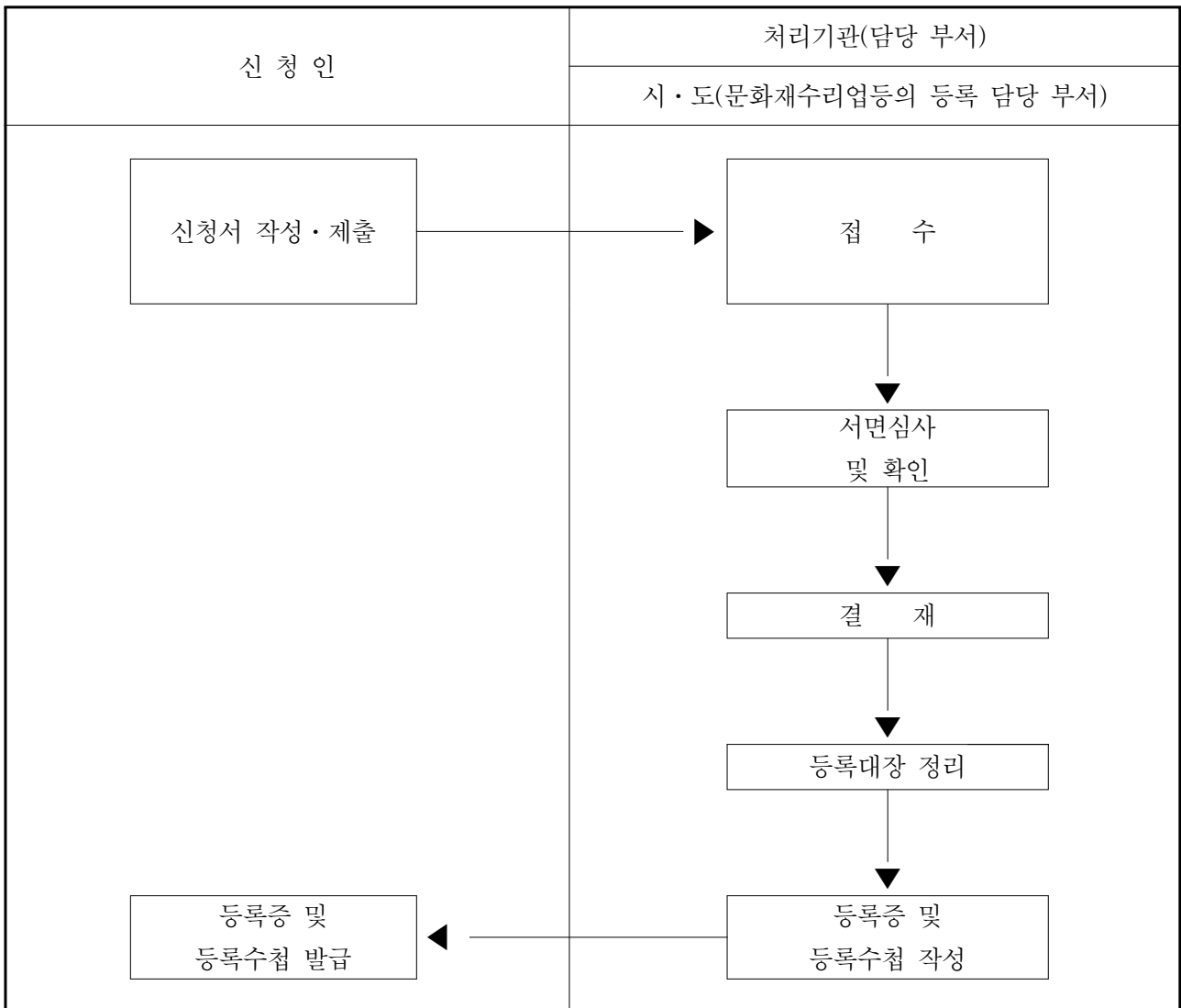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p>※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p>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재 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등 록 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2쪽부터 4쪽까지 참조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직인</div> </div>			

105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변경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 고

※ 확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구 분	등록(신고) 업종 및 번호		등록일 (신고일)	비고
	건 설 업 등 록				
	건축사 업무신고				
	기 타				
그 밖 의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등록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시설(사무실) 현황			
시설명	면적	주소	소유형태

자본금 현황									
자산총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기관(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일련 번호	등록일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수령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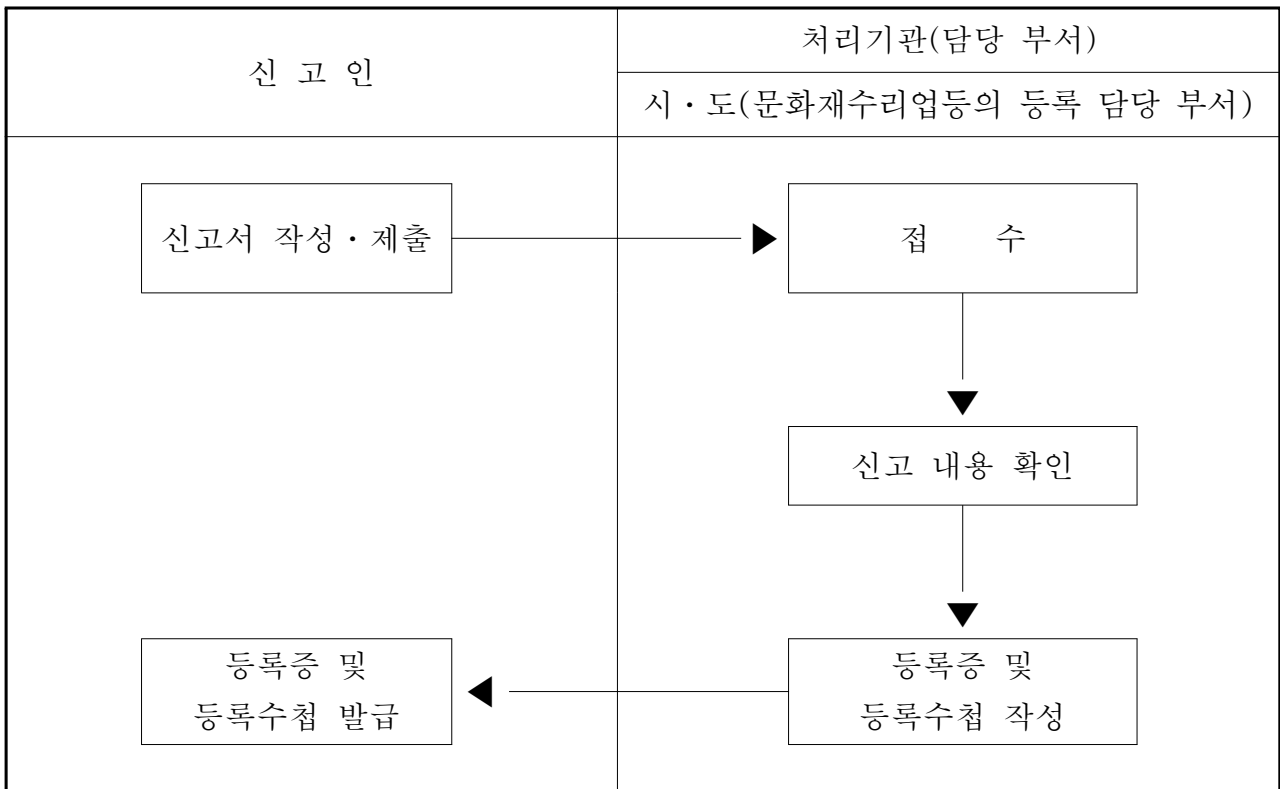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 상호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⑥ 변경 구분	⑦ 변경일	⑧ 변경 전 사항	⑨ 변경 후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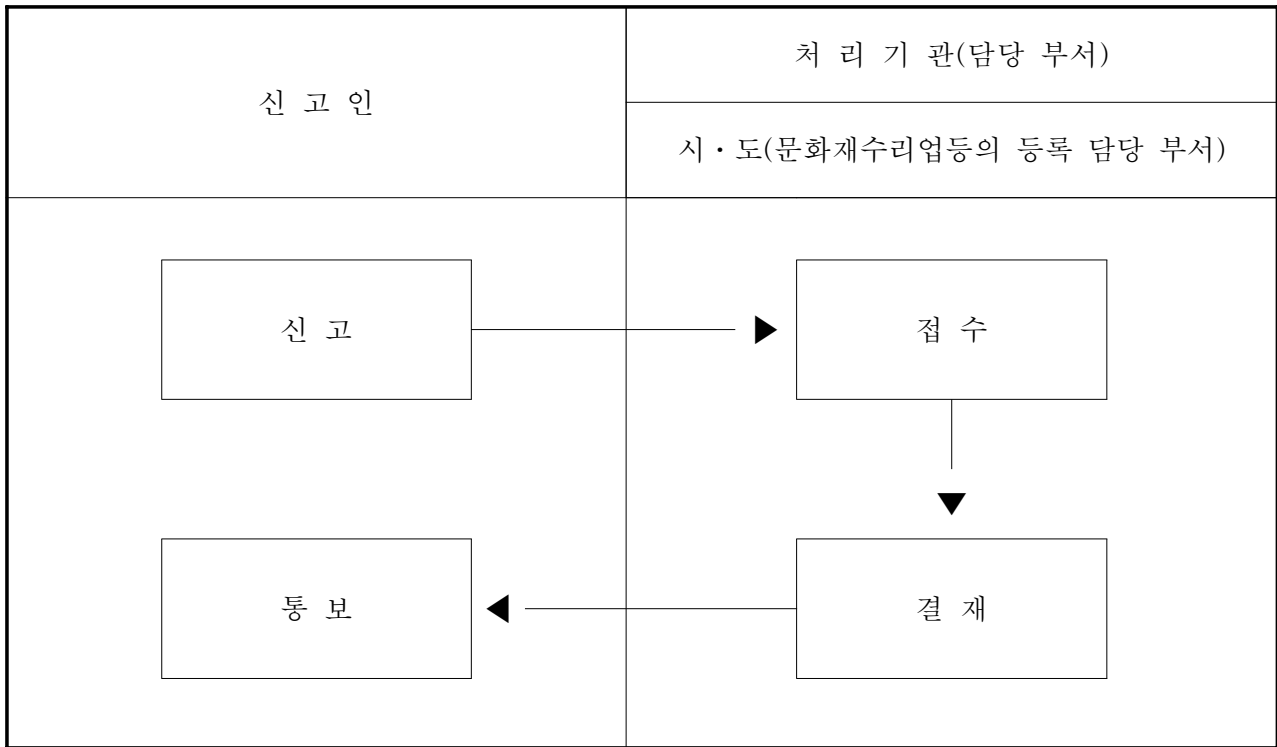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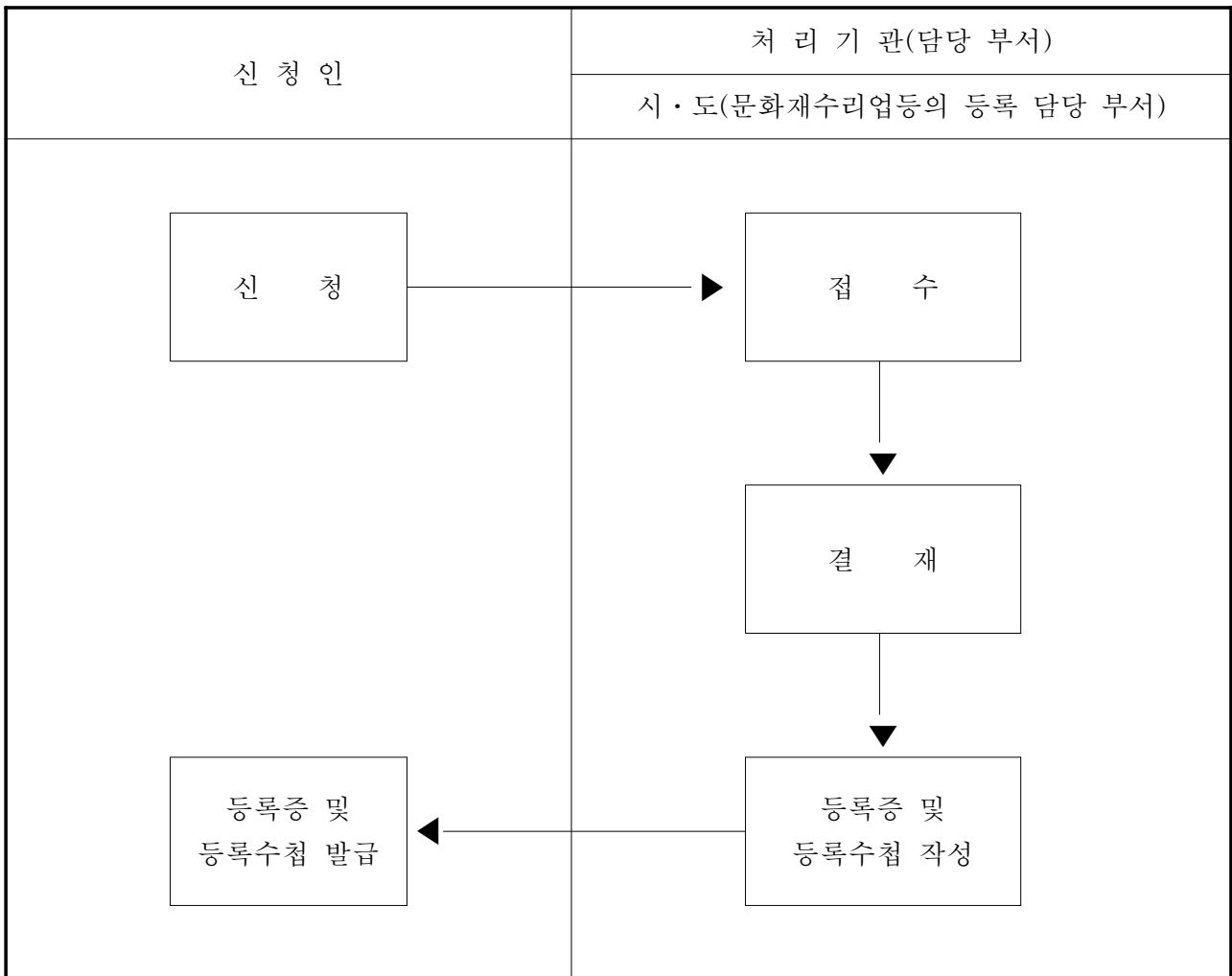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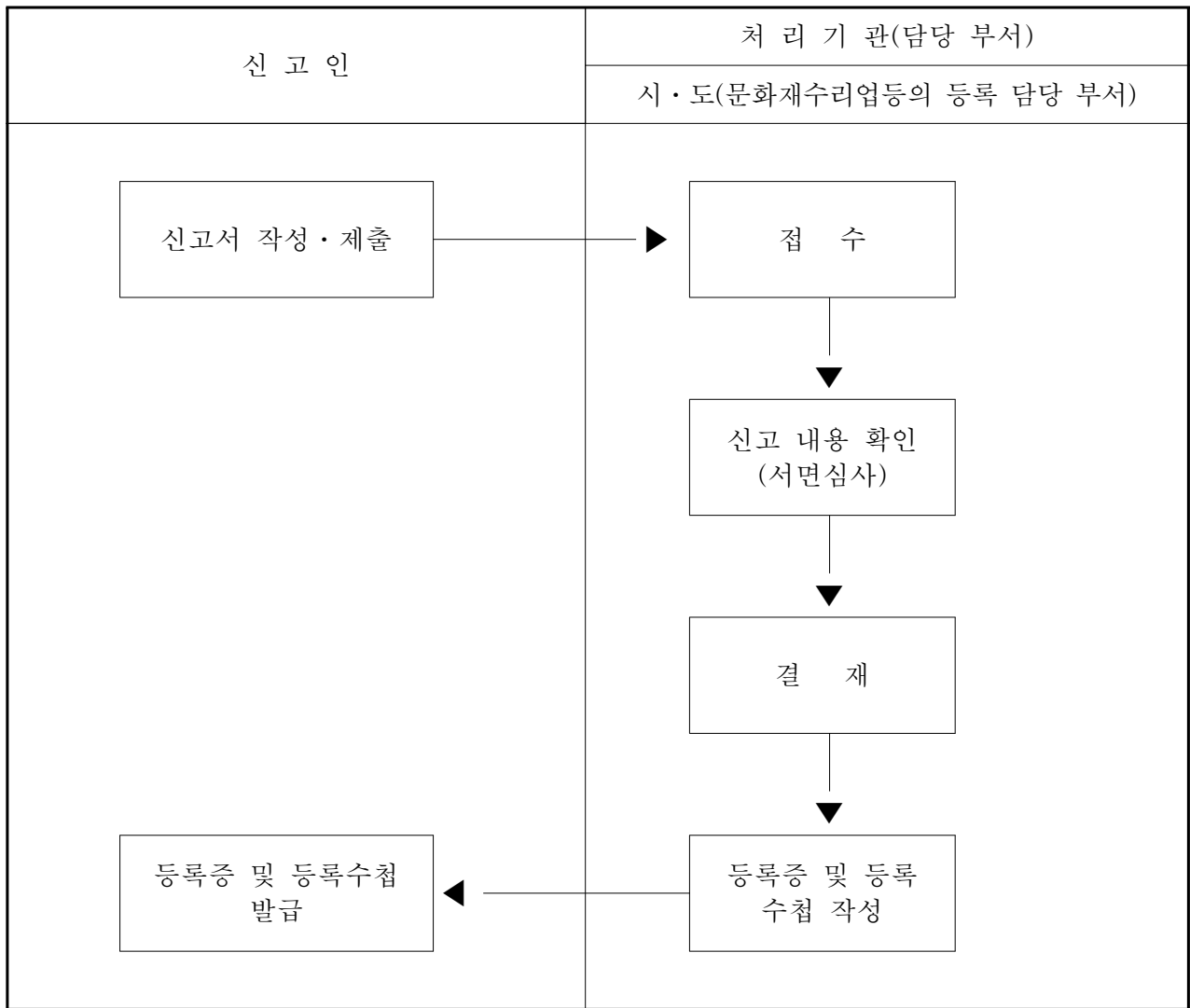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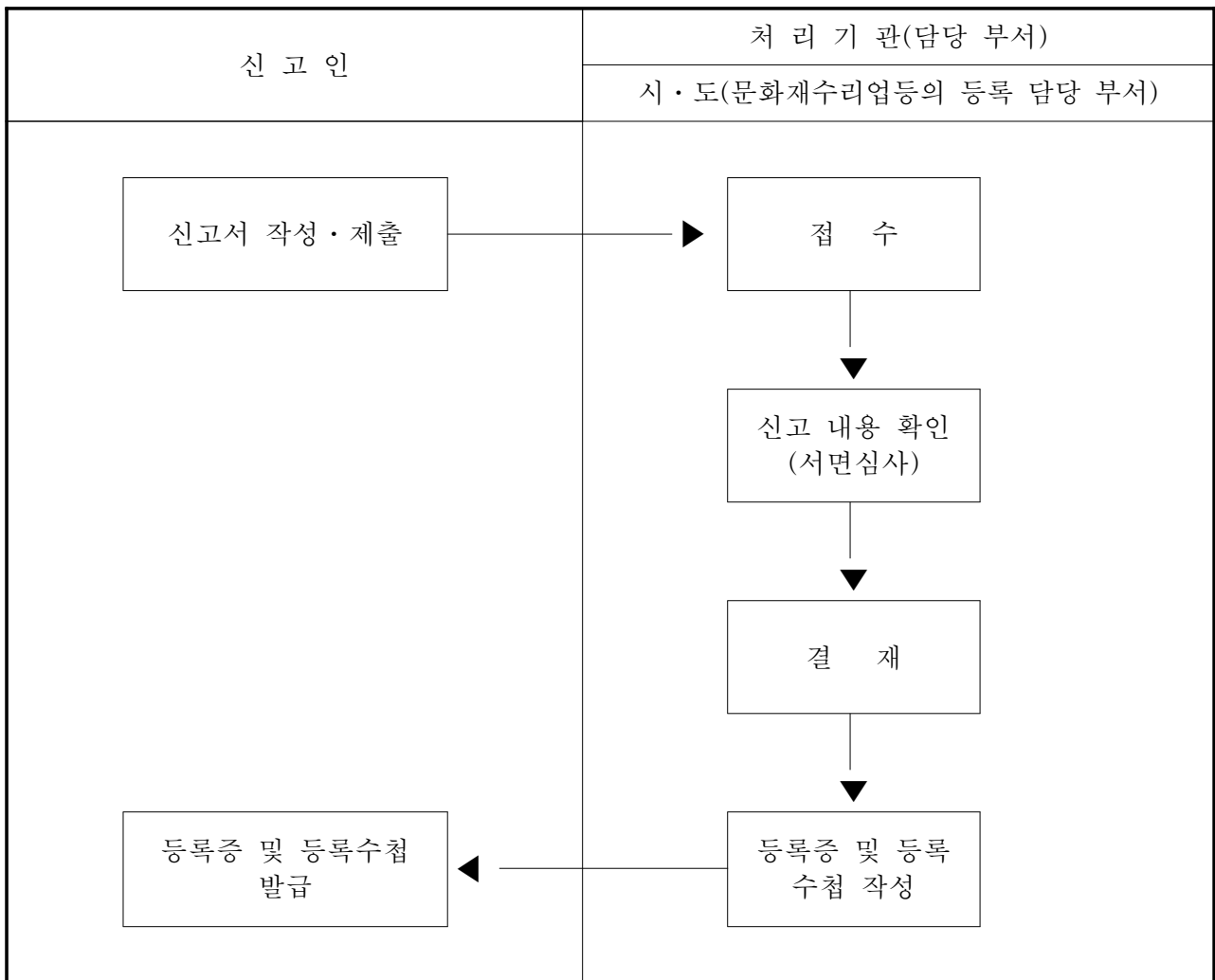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⑥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⑦ 등록번호	
합병 법인	⑧ 상 호		⑨ 대 표 자	
	⑩ 법인(주민)등록번호		⑪ 전화번호	
	⑫ 영업소 소재지			
	⑬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⑭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⑮ 상 호		⑯ 대 표 자	
	⑰ 법인(주민)등록번호		⑱ 전화번호	
	⑲ 영업소 소재지			
	⑳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㉑ 등록번호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p>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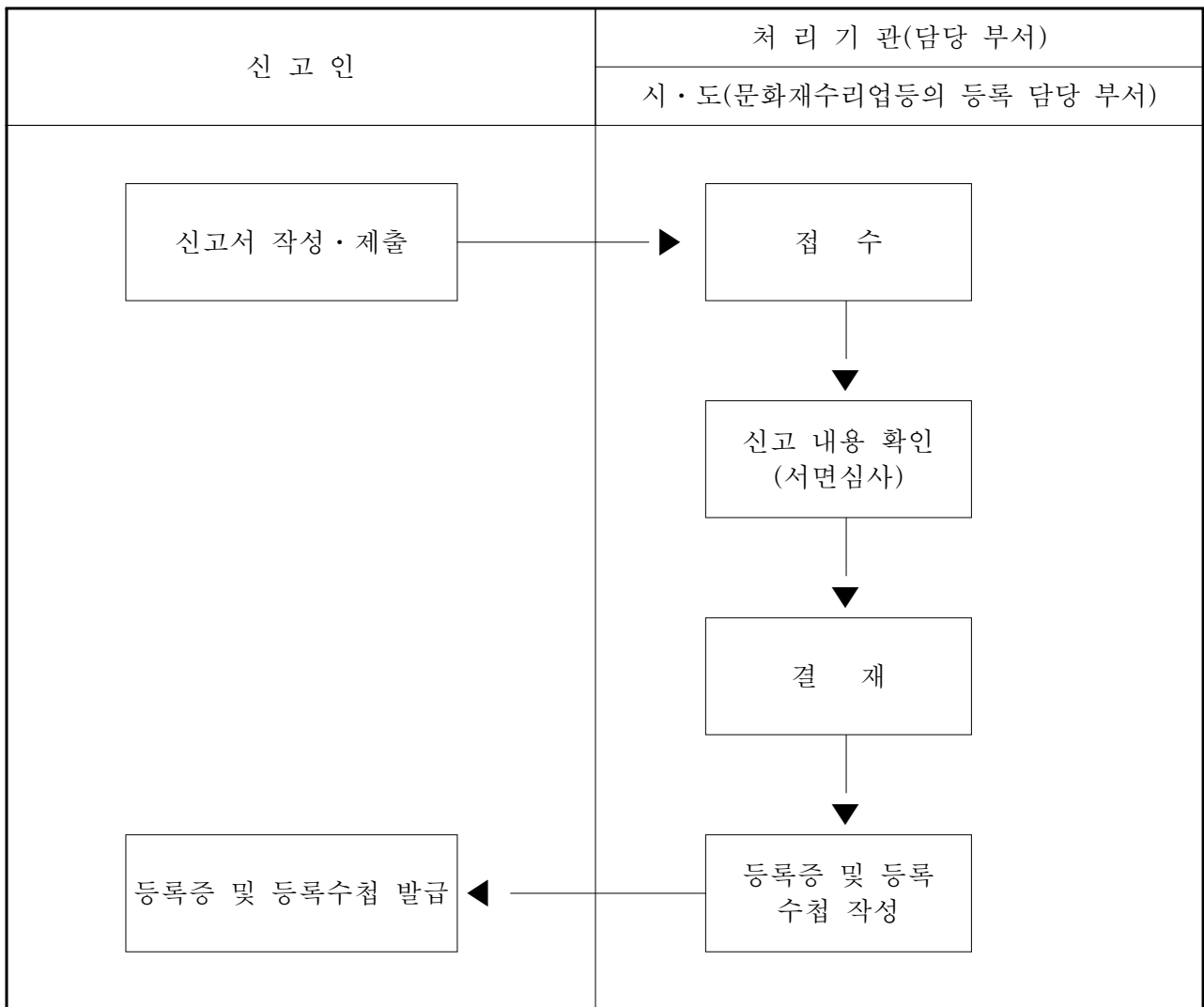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문화재수리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 금			
발 주 자 의 지 급 재 료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연 대 보 증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주 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4. 문화재수리 참여자 현황							
현 장 대리인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문화재수리의 진척 및 문화재수리 대금의 수령 현황							
구분	업 체	회 차	검사일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 계	잔 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율)							
기성금 (기성율)							
준공금							
6. 사 후 관 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실측설계 도급 대장								
1. 설 계 개 요								
설 계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설계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실측설계 참여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4. 그 밖의 사항								
○ 해당 문화재의 실측설계 시 특이사항을 기록 (원형 고증, 주요 진통기법조사 내용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감리 도급 대장							
1. 감리 개요							
감리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감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문화재수리 내용							
상호(명칭)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도급금액		공사기간		변경금액 (1차)		변경금액 (2차)	
4. 감리 참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시정 및 통보사항							
일련번호	시정일	시정 및 통보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감 리 일 지								
공 사 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 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문화재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 명	서 명	주요 업무 수행 내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내용 요약)			
특 이 사 항								
<p>※ 작성요령</p> <p>1. 문화재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p> <p>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교육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20 ~ 20 (시간)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m²)

발주자:

평가자:

(서명)

문화재수리 평가표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업자	대표자: _____, 면허번호: _____					
수리 개요		소재지			공사기간			
		수리금액			평가 연월일			
		현공정			평가 연월일			
구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합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가감점 부여기준

(뒤쪽)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문화재수리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발주자:

(단위: 천원)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									
순위	문화재 수리명 (문화재명)	공사 개요	수리 구분	문화재 수리 금액	수리 기간	회사명	대 표 자	평점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비고

1. 순위는 문화재수리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2. 문화재수리명을 적은 후 () 안에 문화재명을 작성한다.
3. 수리 구분은 보수·조경·보존과학 등으로 작성한다

발주자:

평가자:

(서명)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대표자)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착 공		실측설계금액					
준 공		평가 연월일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등급				점 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0					
3. 내역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30					
4. 도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가감점 부여기준

(뒤쪽)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발주자:

(단위: 천원)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순위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금액	실측설계 기간	실측설계 업명	대표자	평점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비고

순위는 실측설계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문화재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 수리업자명	대 표 자	문화재 수리명	문화재수리 금 액	문화재수리 기 간	평점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 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 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 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을 것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실측 설계업자명	대표자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금액	실측설계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실 확인기관	사실 여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581 제2조(정의) 58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81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582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582	제1조(목적) 581 제2조(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582 제3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8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582 제5조(위원의 임기) 583 제6조(위원회의 회의) 583 제7조(간사 및 서기) 584 제8조(소위원회) 584 제9조 <삭제> 584 제10조(운영세칙) 584	제1조(목적) 581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584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기초조사) 585 제7조(고도의 지정) 586 제8조(지구의 지정 등) 587 제9조(고도보존계획) 588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589	제11조(기초조사) 585 제12조(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 586 제13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 587 제14조(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588 제15조(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589 제16조(보존계획의 공고) 589	제3조(고도지정 신청) 586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587

제22조(보고 및 검사) 600
 제23조(토지 출입 등) 600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601
 제25조(청문) 601

제5장 별 칙

제26조(별 칙) 602
 제27조(양벌규정) 602
 제28조(과태료) 603

부 칙 604

제23조(권한의 위임) 601

제24조 <삭제> 603

부 칙 604

제9조 <삭제> 603

부 칙 604
 시행규칙 서식 61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04. 3. 5. 제정 법률 제7178호	2005. 3. 5 제정 대통령령 제18730호	2005. 3. 5 제정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
2006. 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2007. 8.17 대통령령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 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2008. 7.24 대통령령 제20935호	
2007. 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2009.11. 9 대통령령 제21812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40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2008.12.26 법률 제9213호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 5. 8 법률 제9656호		
2009. 6. 9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 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 제한법)		

* 제정 법령 이외에는 모두 일부개정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문화적 민족의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역사적 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고도보존사업"이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p>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조(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p> <p>제3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사업에 관하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전문개정 2008.7.24]</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총괄</p>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③ 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p> <p>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7.24]</p> <p>제9조 삭제 <2008.7.24></p> <p>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7.24]</p>	<p>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p>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② 기초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초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2.21]</p>	<p>·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7.24]</p> <p>제12조(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p>	<p>제3조(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p>[전문개정 2008.7.24]</p>

제8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2.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13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2007.12.21]</p> <p>제9조(고도보존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p>	<p>제14조(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p>	

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
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지정지구에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2.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지정지구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
영하여 보존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15조(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9조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24]

제16조(보존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존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계획을 둘 이
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계
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
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2.21]</p> <p>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개정 2009.5.8>)</p> <p>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p>	<p>제17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를 관</p>	<p>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7.24]</p>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단하여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전문개정 2008.7.24]

제18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p>	<p>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7.24]</p> <p>제19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p> <p>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p>[전문개정 2008.7.24]</p>	

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 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p> <p>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p> <p>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p> <p>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p> <p>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p> <p>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p>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2007.12.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존사업 등</p> <p>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p>		<p>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p>

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보존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과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와제 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p>	<p>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p>[전문개정 2008.7.24]</p> <p>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p>	<p>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보칙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라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나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청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추천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등
 4. 법 제9조에 따른 보존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2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p> <p>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p>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 삭제 <2008.7.24>

제9조 삭제 <2008.7.2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78호,2004.3.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p> <p>④내지 <87>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730호,2005.3.5></p> <p>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p> <p>⑩내지 <241>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호,2005.3.5></p> <p>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호,2008.7.2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내지 <77>생략

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 생략</p> <p>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p>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4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부칙 <제921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656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p> <p>③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 2010.3.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p> <p>③ 부터 <45>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제 목 고도 지정 요청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도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1. 요청대상 고도명
2. 고도 지정 요청 사유

붙 임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1부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발신기관명

수신자 문화재청장

(경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시)

제 목 지정해제·지구변경 요청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지구의 해제·변경을 요청합니다.

1. 해제·변경할 지구의 명칭:
2. 해제·변경할 지구의 위치:
3. 해제·변경할 지구의 면적:
4. 해제·변경의 주요 사유:
5. 그 밖의 사항:

붙 임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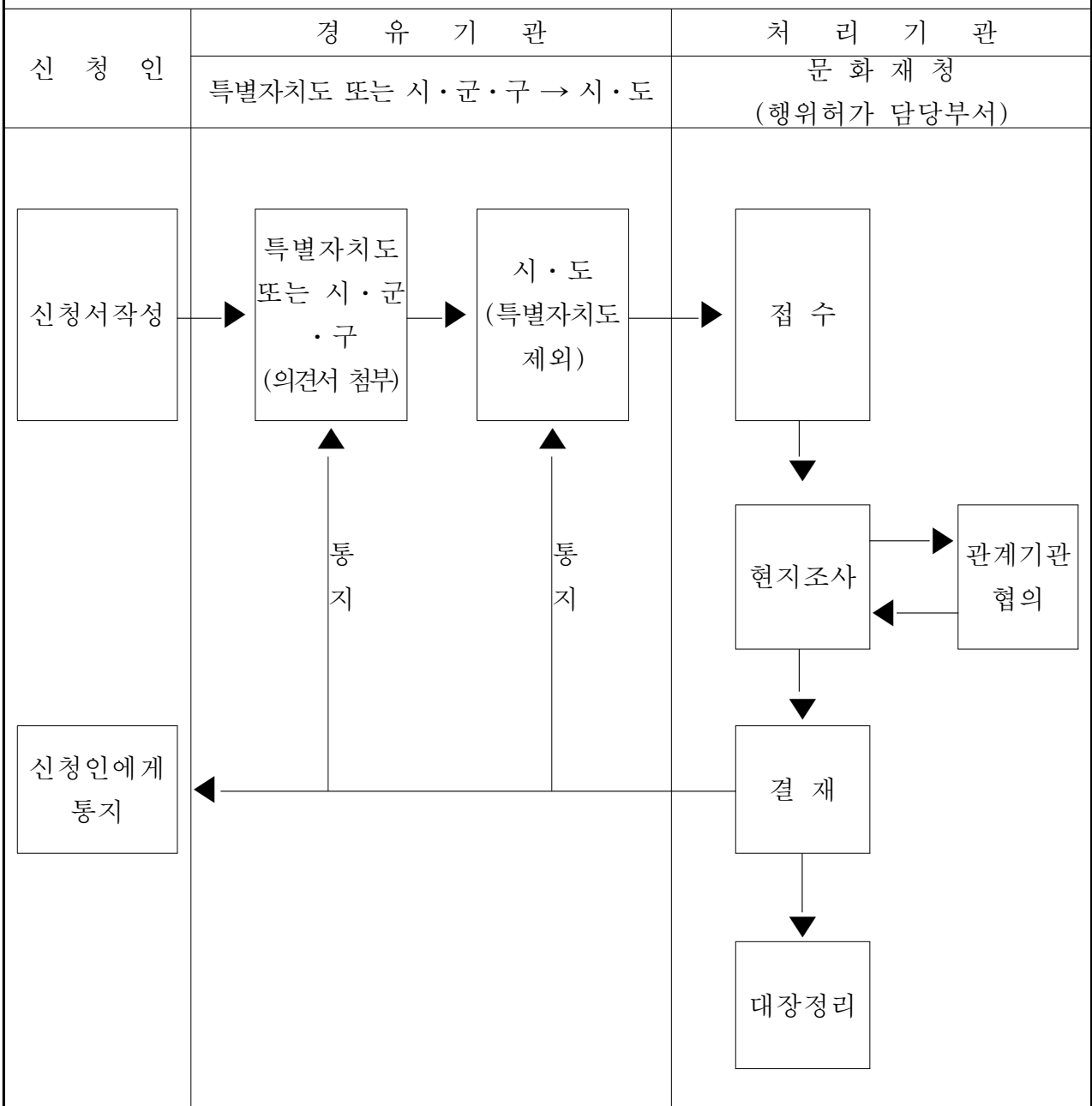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우 (전화:)					
허 가 신 청 사 항							
위 치(지 번)				지 목			
신 청 행 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 분	종 류	구 조	연 면 적	층 수	용 도	
	종 전						
	신 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 분	신 청 면 적	경 사 도	토 질	토석매장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 분	신 청 면 적	주 요 수 종	입 목 지	무 입 목 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 분	신 청 면 적		종 류		부 피	
	토석류 채 취						
	토석류적 치 (積置)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 분	신 설		확 장		포 장	
	신청면적						
기 타							
행 위 허 가 신 청 목 적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구비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 2. 관련 설계도서 1부
-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4. 위치도와 현장사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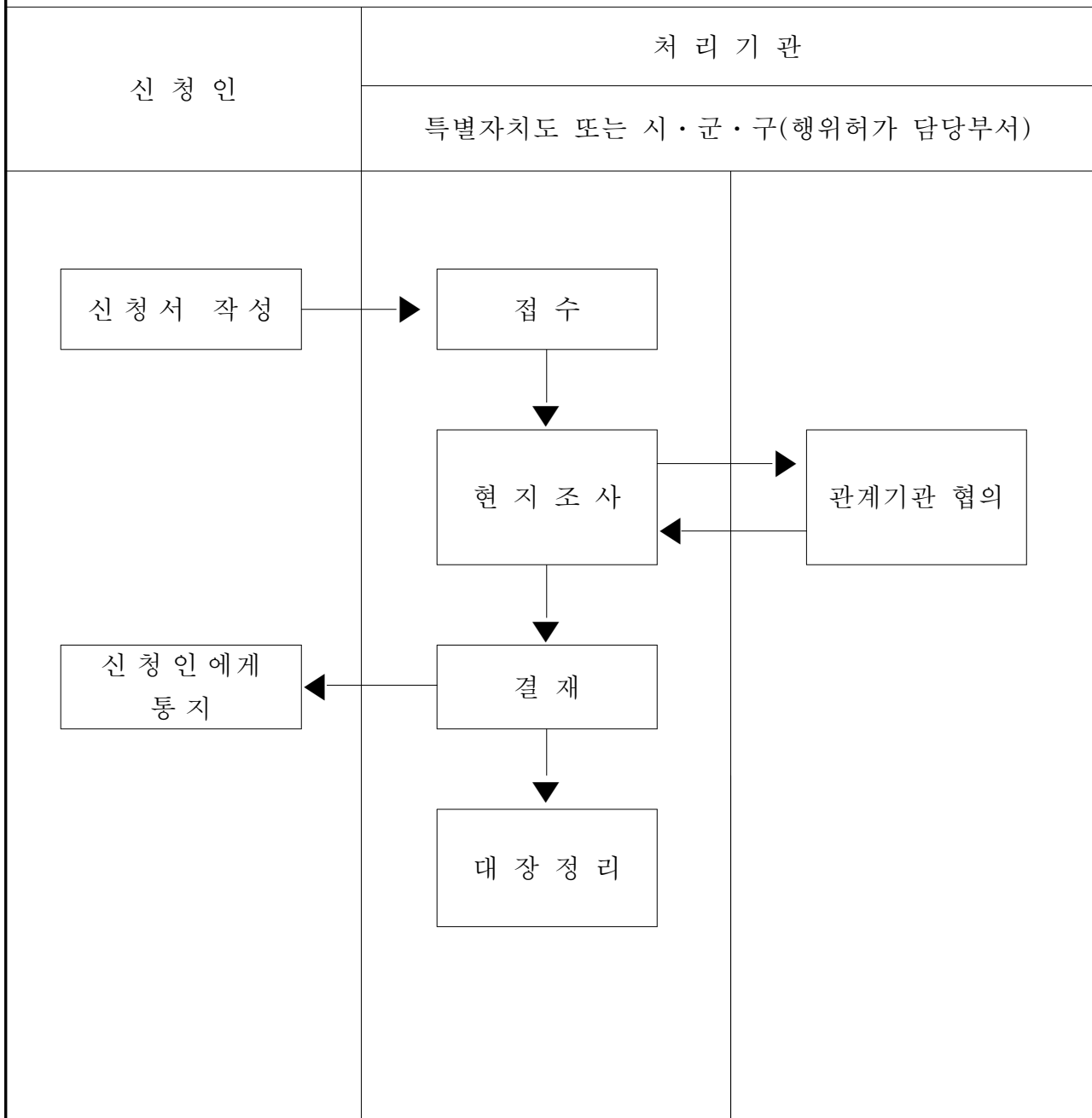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허가 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 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청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청면적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청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 채취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신청면적					
기타							
행위 허가 신청 목적							
<p>「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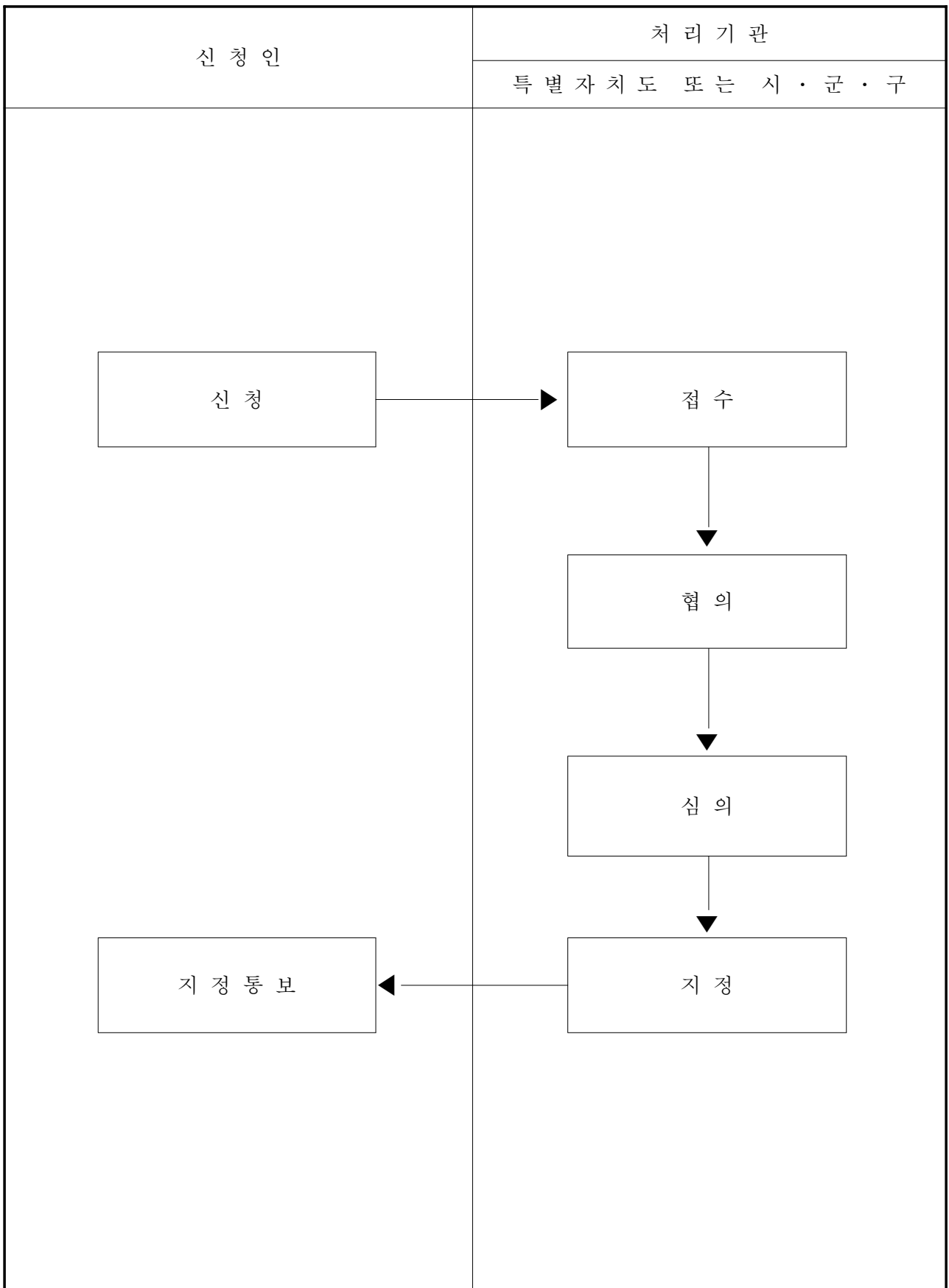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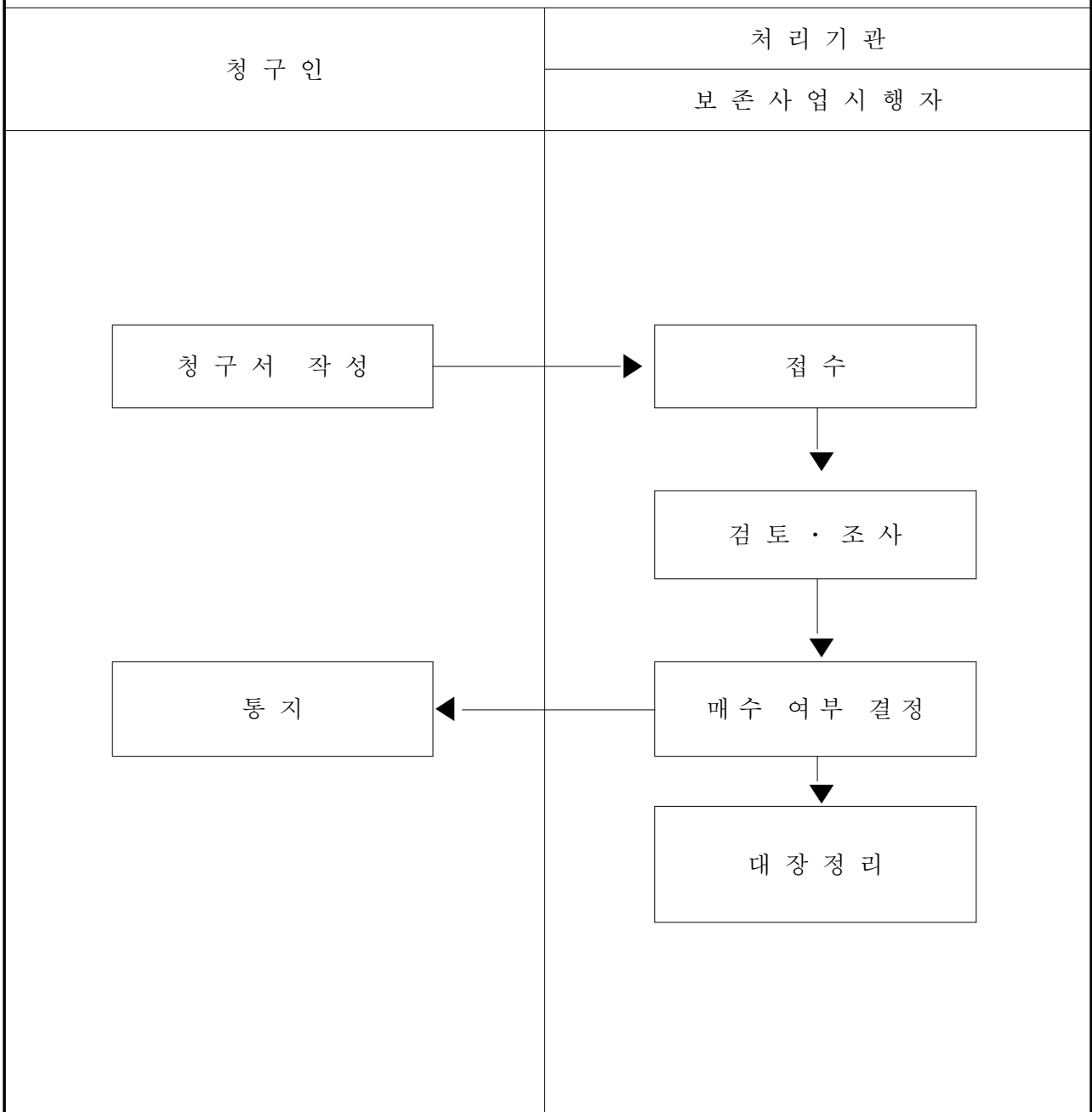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input type="checkbox"/> 특별보존지구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환경지구		접 수(※)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 호	
토 지 에 사 관 한 사 항	소 유 자	①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③주 소 우		(전화:)		
	구 분	④위 치	⑤지 변	⑥전 체 면 적(m ²)		⑦편 입 면 적(m ²)
	현 황					
	확 인 내 용(※)					
건 물 에 사 관 한 사 항	소 유 자	⑧성 명(법 인 인 경우 는 그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⑩주 소 우		(전화:)		
	구 분	⑪위 치	⑫지 변	⑬전 체 연 면 적(m ²)		⑭편 입 연 면 적(m ²)
	현 황					
	확 인 내 용(※)					
⑮종 류(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⑱사 용 연 수		
매 수 청 구 에 관 계 되 는 권 리	⑲ 권 리 종 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⑳ 설 정 기 간	㉑ 잔 존 기 간	㉒ 담 보(한 도)	㉓지 대 (연간금액:)	㉔ 특 기 사 항
기 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right: 50px;"> (소유자와의 관계:) </div>						
사업시행자 귀하						
구 비 서 류	청구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 적는 요령

-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2. ⑦, ⑭, ⑮~⑰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3. ⑮~⑰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습니다.
- 4. ⑱~㉔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 화 재 보 호 기 금 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627	제1조(목적) 627
제2조(정의) 627	
제3조(기금의 설치) 627	
제4조(기금의 조성) 627	제2조(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627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627
제5조(기금의 용도) 628	제4조(기금의 용도) 628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62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628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629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629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구성 및 운영) 629
	제8조(위원장의 직무) 630
	제9조(회의) 630
	제10조(간사) 630
	제11조(수당) 630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630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630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631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631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631	제13조(기금 계정) 631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631	제14조(기금의 수납) 631
제13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31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631
부 칙 632	제16조(장부의 비치) 632
	부칙 632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p>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란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를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②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문화재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p>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p>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6.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p>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2.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3.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4.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5. 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무 <p>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문화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p>5.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p>	<p>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기금 계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p data-bbox="465 1257 808 1292">부칙 <제9756호,2009.6.9></p> <p data-bbox="197 1356 848 1390">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1153 280 2065 363">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p> <p data-bbox="1153 384 2065 467">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p> <p data-bbox="1153 488 2065 571">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 data-bbox="1128 643 2065 826">제16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p data-bbox="1153 847 2065 930">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 data-bbox="1413 1257 1778 1292">부칙 <제21872호,2009.12.7></p> <p data-bbox="1153 1356 1682 1390">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령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 2007.3.22 대통령령 제19945호]</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637 제2조(정의) 637</p>	<p>제1조(목적) 637</p>
<p>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p>	
<p>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638 제4조(정관) 639 제5조(기본계획) 640 제6조(시행계획) 641</p>	<p>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640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41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641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641</p>
<p>제7조(보전·관리계획) 641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642</p>	<p>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642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643</p>
<p>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p>	
<p>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643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643 제11조(지정기탁재산) 644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644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644 제14조(회계 등) 645</p>	<p>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643</p>
<p>제9조(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644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645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645</p>	<p>제9조(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644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645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645</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 2007.3.22 대통령령 제19945호]</p>
<p>제15조(조세감면) 646 제16조(재정지원) 646</p>	
<p>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p>	
<p>제17조(총회 및 이사회) 646 제18조(준용) 647</p>	
<p>제5장 보전협약</p>	
<p>제19조(보전협약) 647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648</p>	<p>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647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648</p>
<p>제6장 보 칙</p>	
<p>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648 제22조(모금) 649</p>	<p>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648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649</p>
<p>제7장 별 칙</p>	
<p>제23조(과태료) 650</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650</p>
<p>부 칙 651</p>	<p>부 칙 651</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p> <p>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p> <p>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p>	

제4조(정관) ①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5조(기본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p>③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전·관리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교육·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p> <p>②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화유산의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문화유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나. 문화유산의 작자·유래다. 문화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형태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나. 지형·지질·자연경관의 특수성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라. 토양의 특성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②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전자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p>

제14조(회계 등) ①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 :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⑤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국민신탁법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p> <p>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p> <p>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②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면적 및 권리내용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p>	<p>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기간·소요예산·추진절차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 당해 계획의 수립·확정 전
2. 개발사업 : 당해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모금)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모금지역·모금기간·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p> <p>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p> <p>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912호,200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

부칙 <제19945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 단서 중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p> <p>⑪ 부터 <22>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5.25] [대통령령 제22166호, 2010. 5.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5.8.16, 2006.12.7, 2007.3.15, 2009.4.6>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신설 2006.12.7>

제2장 문화재청

제3조(직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삭제 <2004.3.11>

제5조(하부조직) ①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개정 2009.4.6>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전문개정 2004.5.24]

제5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5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5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편성·집행의 조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조정
 3. 삭제 <2010.5.25>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삭제 <2010.5.25>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 총괄
 7. 삭제 <2010.5.25>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삭제 <2010.5.25>
 1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0.5.25>
 17. 문화재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18. 삭제 <2010.5.25>
 19. 삭제 <2010.5.25>
- [본조신설 2008.2.29]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0.5.25>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삭제 <2010.5.25>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8. 삭제 <2010.5.25>
 9.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민방위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관리 및 조정
 10. 삭제 <2010.5.25>
 11.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8.2.29]

제7조(문화재정책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0.5.25>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 분류·지정체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5.25>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5.25>
 8.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 등과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5.25>
 10. 삭제 <2010.5.25>
 11.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12. 삭제 <2010.5.25>
 13.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0.5.25>
 16.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운용
 18. 삭제 <2010.5.25>
 19. 삭제 <2010.5.25>
 20.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1. 고도보존 지구의 지정·해제·변경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0.5.25>
 23. 한국전통문화학교·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 [전문개정 2004.5.24]

제8조(문화재보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0.5.25>

1.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개선 총괄
3. 국보·보물·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은 제외한다)·천연기념물 등의 지정·해제 등과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5.25>
 5. 삭제 <2010.5.25>
 6. 문화재 국외반출의 허가
 7. 삭제 <2010.5.25>
 8.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속하는 유형문화재·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0. 삭제 <2010.5.25>
 11. 삭제 <2010.5.25>
 12. 삭제 <2010.5.25>
 1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검토·심사, 기술지원·지도
 15.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 [전문개정 2004.5.24]

제8조의2(문화재활용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0.5.25>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유적 활용 및 문화재분야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5.25>
4. 삭제 <2010.5.25>
5. 궁·능·원·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리체계 및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한 사항
6. 궁·능·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7. 삭제 <2010.5.25>
8. 삭제 <2010.5.25>
9.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조정
10.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1. 삭제 <2010.5.25>
12. 삭제 <2010.5.25>
13. 세계유산 등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만 해당한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0.5.25>
17.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립고궁박물관·세종대왕유적관리소·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감독

[전문개정 2004.5.24]

[제목개정 2009.4.6]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한국전통문화학교 <개정 2010.5.25>

제10조(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1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12조(학과장) ① 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 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3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14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지원

-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9.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전문개정 2010.5.25]

제15조(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6조(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 2010.5.25>

제17조의2(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7조의4 삭제 <2010.5.25>

제17조의5 삭제 <2010.5.25>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개정 2005.8.16>

제18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조사·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8.16]

제19조(관장) ①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6, 2006.6.30>
②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6,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6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개정 2009.4.6>

제21조(직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유물의 조사·연구·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2조(소장) 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5, 2009.4.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4.6>

제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9.4.6>
[전문개정 2005.4.15]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24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소장) ①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 2005.4.15, 2005.8.1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27조(분소) ①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제28조(직무)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영릉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와 세종대왕의 유덕 및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소장) ①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 2005.4.15, 2005.8.1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소장) ①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5, 2005.4.15>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장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개정 2007.3.15>

제32조(궁·종묘관리소) ①경복궁(7궁을 포함한다)·창덕궁·창경궁·덕수궁 및 종묘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를 두며, 그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6, 2008.2.29>

②각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8.16>

제33조(능관리소) ①능·원·묘 및 그 부속임야와 토지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13개의 능관리소를 두고, 그 소속하에 3개 이내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3.15>

②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5, 2008.2.29>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③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인(6급 1인)과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또는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6.4.6, 2006.12.29, 2009.4.6>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6.12.29, 2008.2.29>

②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1.30, 2008.2.29, 2010.5.25>

제36조 삭제 <2006.12.7>

부칙 <제22166호, 2010. 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84명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9.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2010. 9.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재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법무감사팀장 및 정보화기획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화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국정운영·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3. 국정과제·공약사항의 관리
4.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청장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6. 각종 회의(확대기관장회의 및 간부회의는 제외한다)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문화재청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8. 문화재청 소관 예산의 편성·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재정계획의 총괄·조정 및 자원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9의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조정
10.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조정·관리
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의 예산 편성·조정
12.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에 관한 사항

13.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1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문화재연감 등 문화재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16.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17.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4.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조정
 5. 위임전결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7. 지방 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 관리
 9. 총액인건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1.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의 조정·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4. 갈등관리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15.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6.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7.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8.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
 19. 청내 업무분장에 관한 분쟁의 조정
- ⑤ 규제법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문화재 분야 규제·법무 정책의 수립·시행
 2. 법령안의 입안·심사
 3. 법령에 관한 자문·해석·회신에 관한 사항 총괄
 4. 입법계획의 종합·조정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5. 외국과의 협정·협약·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6. 법규집의 발간·편찬
 7.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0.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2. 퇴직자의 취업 승인·제한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업무 총괄
-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문화재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문화재 기록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6. 정보보호 관련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8. 청내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9.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10. 정보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및 평가
 12. 기록관의 운영과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의 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계전산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속기관 기록화·정보화 업무의 지도·감독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문화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재정책국에 정책총괄과·무형문화재과·발굴제도와·안전기준과 및 고도보존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고도보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의 분류·지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 관리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7.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8.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보호 관련 서훈(敍勳)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4.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16. 문화재 정책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17. 문화재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18. 시·도지정문화재 관련 통계의 종합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보존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관련 업무 총괄
 20.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지도·감독
 2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선양(宣揚)에 관한 사항
 8. 중요무형문화재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운용에 관한 사항
 10.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11.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4.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전수교육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 ⑤ 발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매장문화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발굴경비 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5. 「문화재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6.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7.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7의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문화재콜센터의 운영
8. 「문화재보호법」 제5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과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보호법」 제6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등에 관한 보호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1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12.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간 협의 총괄
13.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5. 매장문화재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연구
16.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7.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재 조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8.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문화재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평가
2. 문화재 안전 정책의 수립·조정과 제도의 운용
3. 문화재의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보호법」 제88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예방과 소화 장비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재난 예방에 관한 훈련·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8.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부의 재해·재난 종합 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 10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의 방충·방염 사업의 총괄
12.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13. 문화재 재해·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1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15.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 공항·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17.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 18. 압수문화재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9.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⑦ 고도보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도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 3. 고도보존계획의 승인
- 4. 고도 육성에 관한 사항
- 5. 고도의 지정·변경 및 해제
- 6. 고도보존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 7. 고도보존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8. 고도보존 지정지구 안에서의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9.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11.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문화재보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존국에 보존정책과·유형문화재과·천연기념물과 및 수리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화재 보존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4.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 5.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현상변경 제도의 개선 총괄
- 6.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7.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하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적정성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 8.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 9.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0. 유교문화권·남해안관광벨트 안의 유적 정비에 관한 사항
- 11.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지원과 지역문화유산 개발에 관한 사항
- 12. 사적의 보수·정비 및 보수·정비·활용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13. 문화재 경관제도의 운용·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 14. 문화재 보존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 15. 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16. 사적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8.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21.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22.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보·보물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보·보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보·보물의 현상변경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보·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5. 국보·보물의 지정조사 계획의 조정·총괄
 6. 국보·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관리취약 국가지정문화재의 특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8. 국보·보물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9. 국보·보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보·보물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국보·보물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 제도의 운영·개선
 14. 사찰·문중 등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7. 시·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건조물·동산문화재만 해당한다)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유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 ⑤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승·천연기념물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명승·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명승·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증식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6. 천연기념물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7. 명승·천연기념물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1. 천연기념물 보호단체·치료기관의 육성·지원
1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13.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관련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5.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운영
- ⑥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문화재 수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 문화재 수리기준의 제정·시행
 4.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에 관한 사항
 8. 승례문 종합 복구계획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설계심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통 목조건축물의 영조규범(營造規範)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1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공사의 기술지원·지도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중·장기 육성과 연차별 수급계획 수립
 1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수리업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문화재보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문화재활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궁능문화재과·국제교류과 및 근대문화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적 활용과 문화재분야 녹색성장 전략 수립·조정 및 시행
5.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운용에 관한 사항
6. 궁궐 문화유산의 활용전략에 관한 사항 총괄
7. 문화재 보호 관련 민·관 협력모델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재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9.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1.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활용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관한 사항 총괄
14.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국립고궁박물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감독

④ 궁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궁·종묘·능·원(이하 "궁·능" 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궁·능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
3. 궁·능 관리 선진화 방안 사례 조사·연구
4. 궁·능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방안 수립·시행
5. 궁·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궁·능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7. 궁·능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8. 궁·능의 종합 방재정책 수립·시행
9. 궁·능 전통조경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목의 관리
10. 궁·능 전통조경계획의 복원·연구에 관한 사항
11. 궁중문화의 발굴·재현에 관한 사항
12. 궁·능의 관리체계·관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궁·능의 편의시설·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궁·능의 홍보·체험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15. 궁·능의 장소사용 정책 수립·시행 및 조정
16. 조선왕릉 능제 복원·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17. 관람·유적기관 수입대체경비 제도개선 총괄
- 17의2.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지도·감독

⑤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4. 세계유산·세계유산 잠정목록의 등재·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5. 세계유산 모니터링 기준 마련과 기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대표목록·세계기록유산의 등재·활용에 관한 계획 조정·총괄
7.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사업의 발굴·지원
10. 국외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정책 연구와 민간연구기관 육성·지원
11. 문화재의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2. 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13.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14.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16. 아·태 무형유산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18.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및 세계유산 등에 관한 국제자료 수집
19.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중요민속자료·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요민속자료·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자료등"이라 한다)의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중요민속자료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 중요민속자료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6. 중요민속자료등의 종합 보수·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자료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9. 등록대상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10. 등록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운용에 관한 사항
11.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용·개선에 관한 사항
12. 근대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14.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수립과 거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등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8.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제3장 한국전통문화학교 <개정 2010.5.25>

제9조(한국전통문화학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
2.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연수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8.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사정
11. 전통문화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15.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운영
16.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7.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전자계산소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내 각종 홈페이지 운영·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내 전산장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3. 대학정보공시제 운용 총괄
14. 전통문화연수원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학생생활관·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전문개정 2010.5.25]

제10조(전통문화연수원) ①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연수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의 수요조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
6.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7.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전통문화 연수관련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9.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1. 연수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2. 연수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개선
3. 문화재 시책·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발간·배부·관리 및 교육기법·내용 연구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시행
9. 교수실·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운영
10. 교육생의 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전문개정 2010.5.25]

제10조의2 삭제 <2010.5.25>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정 2010.5.25>

제11조(국립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하에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5.25]

제12조의2(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고궁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5. 전시실 관람서비스 기준 마련·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7.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9. 청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10. 보안 및 관인관수
11.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12. 예산·회계 및 결산
13.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5.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16. 관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고궁박물관의 전시관련 기획·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촬영에 관한 사항
3. 전시관련 궁중유물의 조사 및 연구
- 3의2. 태릉관리소의 전시 지원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6. 전시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7.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守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출·격납과 등록에 대한 업무(구입·대여·기증·기탁·이관·국가귀속 등)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5. 궁중유물의 조사·연구·자료수집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궁중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유물 복원·복제품 등의 저작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8. 궁중유물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궁중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수중발굴과·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중발굴과장 및 해양유물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조직·정원 관리
4. 연구·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
5.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
6. 연구소 종합 정보망 구축·운영
7.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8.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9. 보안 및 관인관수

10.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11. 예산·회계 및 결산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5. 태안지역 연구·보존처리 시설 관리
16. 그 밖에 연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3. 수중문화재 신고해역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유지
4. 대규모 해양개발지역 수중문화재 조사
5. 수중문화재 조사기법 개발과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
6. 수중문화재 조사 선박 및 탐사장비의 운용·관리
7. 수중 잠수요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8. 수중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의 해양환경 분석·연구
9. 수중발굴 유물의 보존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10. 유물의 재질별 과학적 보존처리 및 분석 시스템 구축
11. 유물의 수리·복원 및 재질분석 연구
12. 수중문화재의 보존환경 연구
13. 대규모 경화처리장 등 보존처리 시설 확충 및 관리
14. 보존처리 기기·장비의 관리·운용
15. 보존처리 약품 개발 및 보존처리 요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6. 수중발굴 및 보존과학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협력
17.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18. 그 밖에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3. 전통선박의 조사·연구와 실물·모형 제작 및 관리
4. 해양민속문화·해양 생활사 및 해양유적지의 조사·연구
5. 해양역사·선박발달사 및 해양교류사 연구
6. 청자운반선, 조운선, 어선 등의 고대항로에 관한 연구
7. 고선박 구조, 조선기술·고대항해술 연구
8. 복원된 전통선박의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9. 해양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협력
10. 그 밖에 해양유물과 해양문화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⑥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의 전시·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소장유물의 관리와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4. 상설·특별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운용
5. 고선박, 전통선박 등의 야외전시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6. 어린이체험관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용
7. 관람환경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8. 전시안내 서비스 기준 마련·운용
9. 해양유물 전시·홍보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용
11. 학술도서, 자료 등의 종합 관리·운용
12.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5.25>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현충사관리소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급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8. 보안 및 관인관수
9.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10. 예산·회계 및 결산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15.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6.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제17조(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장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제19조(궁·종묘관리소) ①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복궁과 칠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덕수궁관리소의 지도·감독

③ 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창경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의 지도·감독

④ 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식물원의 관리
 6. 그 밖에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덕수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묘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능관리소와 그 출장소) ①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태릉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능관리소장(태릉관리소장을 제외한다)은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5.25>

③ 능관리소장과 그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능·원·묘 구역안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9.20>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5.25>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5.25>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④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⑤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 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 ⑦ 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 ⑧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부칙 <제65호, 2010.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1996. 4.19.	제정	대통령령	제14982호
1999. 5.24.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6347호
2000. 2.14.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6716호
2001. 1.29.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115호
2002.12.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859호
2005. 8.1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001호
2007. 8.1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222호
2008. 2.29.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9.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04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사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전통문화연수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할아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전통문화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통문화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5.24, 2001.1.29, 2008.2.29>

②전통문화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제4조(학칙) ①전통문화학교의 학칙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통문화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2000.2.14>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1.1.29, 2008.2.29>

제5조(과정의 설치) 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사과정 및 전통문화연수과정(이하 “각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학과·학생정원) ①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관련된 전공과목위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1>

②전통문화사과정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통문화연수과정의 내용) 전통문화연수과정은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재관계자 연수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0.2.14, 2007.8.17, 2008.9.26>

제8조(교육과정 등) ①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0.2.14>

②각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총장 등) ①전통문화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0.2.14>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1999.5.24, 2000.2.14>

③총장은 문화재청장이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④전통문화사과정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전통문화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0.2.14, 2005.8.16>

제10조(교직원 등) ①전통문화학교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조교 및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 및 동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이를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의 문화재연구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③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전통문화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2.31>

⑤삭제 <2002.12.31>

⑥초빙교원의 자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정원 등) 전통문화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9.5.24>

제12조(기획위원회) ①전통문화학교의 중·장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14]

제13조(설치기준)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정에 적합하도록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0.2.14>

제14조(입학자격) 전통문화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0.2.14>

제15조(학생선발방법) 전통문화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 준하여 하되, 구체적인 선발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제16조(수업연한) 전통문화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나 해당 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2.14]

제17조(수업일수 및 학기) 전통문화사과정의 연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4>

제18조(이수단위 등) 전통문화사과정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수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00.2.14>

제20조(학비보조 등) ① 전통문화사과정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부담)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9.5.24>

제21조의2(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전통문화학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4]

제22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전통문화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2.14>

부 칙

부칙 〈제14982호,1996.4.19〉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통문화학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6716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가목중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장”으로 한다.

②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59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001호,2005.8.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교수 또는 부교수”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7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046호,2008.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 2009. 1.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제2조 (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 삭제 <2009.1.19>

제4조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중 중요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5.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 (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7조 (승인·보고의 절차)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부칙 <제25호, 2009. 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년 11월 14일

제16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유네스코 총회는,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에 포함된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과학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여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1964년에 이러한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번 총회의 의제 19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한 바, 제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한 바, 1970년 11월 14일에 본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 한다:

- (가)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 (나) 과학, 기술 및 군사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다)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마)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같은 것으로 백년이상의 골동품;

(바)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사)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 (1)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 (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 (2)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 (3)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 (4)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아)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자)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카) 백 년이상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제2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의적 방법으로, 특히 현행 악습의 증지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한 복구를 하도록 협조함으로써 그러한 악습에 반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이다.

제4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 (가) 관계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 (나) 국가 영역 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 (다)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 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 (라)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온 문화재;
- (마)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 하에 선물로서 증여 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제5조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문화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효의 유자격 요원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직 없는 경우에, 각국의 적절한 바에 따라 그 영역 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

- (가) 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중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방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 규칙안의 작성에 기여하고;
- (나)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 반출이 국가문화유산을 상당히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 최신으로 유지하고;
- (다) 문화재의 보존과 일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 및 기술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실험실, 작업장 등)의 발전 또는 설립을 증진하고;
- (라) 고고학적 발굴의 감독을 조직화하고, 특정 문화재를 '본래의' 장소에 보존함을 보장하고, 장래의 고고학적 탐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을 보호하고;
- (마) (박물관 관리자, 수집가, 골동품 취급자 등)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윤리 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 (바)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본 협약 규정의 지식을 전파하고;
- (사) 문화재의 어떠한 품목이든 그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제6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가)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 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한다. 그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전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
- (다) 이러한 금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문화재를 반출 또는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시킨다.

제7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 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 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 (나) (1)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 (2)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 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 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상기 제6조(나)항 및 제7조(나)항에 규정된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약속한다.

제9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약탈로 인하여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입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의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물품의 반출이나 반입 및 국제교역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노력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당사국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교육, 홍보 및 경각심을 통하여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국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는 행정제재를 조건으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의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한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반출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문화재 구입자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나) 문화재의 가치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재 유산에 대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교류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으로 조성하고 양양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제12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각기 그들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영역내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소유권의 양도를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방지하고;

(나) 당사국의 주무관청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법한 소유자에의 가능한 조기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 보장하고;

(다) 적법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또는 도난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 즉,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 따라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출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제14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래의 출처 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와 방식에 따라 총회에 제출되는 정기적 보고서에 이 분야에서 얻어진 경험의 내용과 함께, 당사국들이 채택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유네스코의 기술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정보와 교육;

(나)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

(다) 조정과 주선.

2. 유네스코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

3. 이 목적을 위하여 유네스코는 또한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유네스코는 자율적으로 본 협약 당사국에게 그 이행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5.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 최소한 2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는 그들 간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할 수 있다.

제18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4 개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0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집행이사회가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모든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2. 가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본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하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2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그들의 본국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전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들 지역에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이나 그 이전에 이들 지역의 통치기관 또는 기타 주무관청과 협의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협약이 적용될 지역을 통고하여야 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을 대신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문서로 통고되고, 그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엔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 20조에 규정된 유네스코 비회원국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제22조 및 제23조에 각각 규정된 통고와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정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으로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본 협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신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의 개방이 종료된다.

제26조

유엔헌장 제102조에 의거 본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70년 11월 17일 파리에서 유네스코 제16차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2부의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유네스코 문서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유엔과 제19조 및 제20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고 1970년 11월 14일에 폐막된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2년 10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총회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본래의 쇠퇴의 원인뿐만 아니라 한층 무서운 손상 또는 파괴현상을 수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서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유의하고,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여하한 품목의 손괴 또는 손실도 세계 모든 국가유산의 유해한 빈곤화를 초래함을 고려하고,

이 유산의 국내적 차원의 보호가 이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보호될 재산이 위치하는 국가의 불충분한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원으로 인하여 종종 불완전하게 됨을 고려하고,

동 기구가 세계의 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 국가에 대하여 필요 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지식을 유지, 증진 및 보급할 것을 동 기구의 현장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문화재 및 자연재에 관한 현행 국제협약, 권고 및 결의가 이러한 진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재산을, 그것이 어느 인민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의 거대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당사국에 의한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유효한 보충적 수단이 될 공동 원조를 부여함으로써 동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무로서 지워져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항구적 기초 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조직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하고,

제16차 총회에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될 것을 결정한 바,
1972년 11월 16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 항목을 '문화유산'으로 간주 한다: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및 여러 요소의 복합체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 건물 또는 연속된 건물의 군집체로서, 그의 건축, 동질성 또는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유적지: 사람의 소산 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역사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제2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 항목을 '자연유산'으로 간주 한다: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 및 정확하게 구획된 구역 내에 위협받는 동물과 식물의 종의 서식지로서 과학이나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천연 명승이나 정확하게 구획된 천연 구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제3조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위의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한 여러 유산을 조사 및 파악한다.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제4조

각 체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자국 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전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자국에 과하여진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체약국은 자국이 갖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또 적당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한도의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 예술, 과학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

각 계약국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전시를 위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가)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유산 보호를 반영한 지역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채택한다;
- (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적절한 직원 체제를 갖춘 한 개 이상의 기관을 자국 내에 설치한다;
- (다) 학문적,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켜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
- (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전시 및 활용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마)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전시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한다.

제6조

1. 계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유산이 영토 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은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또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은 해치지 아니한다.
2. 계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및 전시에 있어, 해당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요청에 응해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3. 각 계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 다른 계약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는 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조치를 고의로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7조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계약국이 행하는 유산의 보존 및 지정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보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체제의 확립을 말한다.

III.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8조

1.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부간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유네스코 정기총회 중에 개최되는 체약국 협약 총회에서 선출되는 15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위원국 수는 협약 가입국수가 적어도 40개국을 넘어설 경우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부터 21개국으로 증가한다.
2. 위원국 선출은 전 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한다.
3. 이 위원회의 회의에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로마센터)의 대표,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 대표 및 세계자연보존연맹의 대표가 협약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국 정기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혹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도 자문역으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

1.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에 선출된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3번째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의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 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정기총회 회기의 종료일에 끝나고, 또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의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행해진 정기총회 후에 개최되는 두 번째 정기총회 회기 말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 선거 후에 유네스코 총회의장이 행하는 추천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이 위원회의 위원국은 자국의 대표로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제10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동 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 혹은 개인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가 있다.
3. 동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자문기구를 형성할 수 있다.

제11조

1. 체약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 영토 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 중 동 조항 제2항에 의거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제한적이지 않으며 목록 제출에는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체약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산으로,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목록(세계유산목록이라고 칭함)을 작성하여 매년 갱신하여 공포한다. 최신의 목록은 적어도 2년에 1회 배포된다.
3.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등재함에 있어서는 해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유산의 등재는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 중요 보존 작업을 요하고 이 협약에 의거 지원을 요청한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갱신하고 공포한다. 이 목록에는 보존 작업에 요청되는 경비의 견적을 포함시킨다. 이 목록에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심각하고 구체적인 위험에 처한 유산만을 등재하여야 하며 그 위험으로는 손괴가 진행됨에 따른 멸실의 위험, 대규모 공적 또는 사적 공사, 급격한 도시 개발 또는 관광 개발을 위한 공사,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동에 기인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 분쟁의 발생 또는 위협, 재난 및 대변동, 대화재, 지진, 홍수, 화산 분출, 수위의 변화, 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언제라도 긴급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새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대해 즉시 공포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 기준을 정한다.
6. 동 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목록 중 어떤 것이든 그 등재를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연 및 문화유산이 위치한 체약국의 의견을 구한다.
7. 동 위원회는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제12조

제11조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느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타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보다 덜 뛰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13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또 기재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때, 체약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 검토한다. 이 요청은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전시 또는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2. 예비조사의 결과로 좀 더 조사할 가치가 인정될 경우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의 지정을 위해 제 항의 국제적 원조의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다.

3. 동 위원회는 그 요청에 대해 취할 행동, 나아가서 적당한 경우에는 지원의 성격 및 정도를 결정하며, 스스로 관련 정부와 필요시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위임을 부여받는다.
4. 동 위원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순위의 결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 유산의 중요성과 자연 환경 또는 세계 모든 국민의 창조성과 역사를 무엇보다도 잘 대표하는 유산에 대해서 국제적 원조를 줄 필요성, 보존작업의 긴급성 및 위협에 처해 있는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능력, 특히 그 국가가 해당 유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한다.
5. 동 위원회는 국제지원이 이루어진 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늘 갱신 공포한다.
6. 동 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금의 자금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자금을 증액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
7.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있는 국제기관, 국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로마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존연맹 및 많은 공사 단체 혹은 개인의 지원을 구한다.
8.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투표 위원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행해진다. 동 위원회의 모든 회합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국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로마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며 동 위원회의 서류 및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그 결의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IV.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제15조

1.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기금, 즉 '세계유산기금' 을 설립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의거한 신탁 기금으로 한다.
3. 기금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가) 계약국의 의무 분담금 및 자발적 기부금;

(나) 다음과 같은 기관의 기증, 증여, 유증:

- (1) 체약국 이외의 국가;
- (2) 유네스코, 유엔의 여타 기구 특히 유엔개발계획, 그 외의 정부간 기구;
- (3)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및 개인;

(다) 기금의 자금으로부터의 이자;

(라) 모금 및 기금을 위해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마)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그 외의 모든 자금.

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에 대한 그 외의 형식에 위한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한다. 동 위원회는 특정의 사업 용도에 한해서 기부 받을 수가 있다. 단, 그 사업은 동 위원회가 이미 실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금에 대한 기부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일 수가 없다.

제16조

1. 체약국은 추가된 자발적 후원금에 관계없이 매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세계유산 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유네스코의 정기총회 중에 개최되는 체약국 총회에서 모든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로 결정한다. 체약국 총회에서의 이 결정에는 본 조 2항에 명시된 선언을 하지 않은 과반수 이상의 체약국의 출석 및 투표를 요한다. 체약국의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각 국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에 있어 본 조 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3. 본 조 2항의 선언을 행한 체약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것으로 언제나 그 선언을 철회할 수가 있다. 단, 선언의 철회는 그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담금이 있을 경우 차기 체약국 회의의 기일까지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4. 본 조 2항의 선언을 행한 체약국의 분담금은 동 위원회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또 그 금액은 본 조 1항의 규정에 구속될 경우에 지불해야 할 분담금액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해당년도분 및 전년도(역년에 의함)분의 분담금 또는 자발적 후원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단, 이 규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체약국으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국가의 임기는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선거 때에 종료한다.

제17조

체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를 구할 것을 목적으로 공사, 사립 재단 또는 단체의 설치를 고려하거나 장려한다.

제18조

체약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해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조직되는 국제적인 모금 운동에 대해 원조를 하도록 하고 또 제15조 3항에 규정된 기관이 행하는 모금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V.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제19조

모든 체약국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위해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을 보냈을 경우, 제2조에 의거하여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제20조

제13조제 2항, 제22조 및 제23조의 (다)규정과 관련, 이 협약 하에서의 국제지원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유산목록 중 어느 한 개의 목록에의 등재가 결정되었거나 등재될 수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에 한해 지원될 수 있다.

제21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지원을 요청하는 신청 절차 및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보호사업의 계획, 필요한 작업, 예상경비, 긴급도 및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의 능력 즉, 모든 경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신청서는 될 수 있는 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재앙과 그 외의 천재지변으로 요청되는 지원신청은 긴급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해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또 동 위원회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사용할 수가 있는 예비비를 준비한다.
3.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한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제22조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를 다음과 같다:

- (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전시 및 기능 회복에서 제기되는 예술적,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나) 승인된 보존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공여;

(다)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전시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련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라) 해당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재 또는 구입할 수가 없는 기재의 공여;

(마) 장기 상환조건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바) 예외적, 특별한 이유의 경우 반환이 필요 없는 무상지원금의 공여.

제23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전시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또는 지역센터에 대해 지원을 줄 수 있다.

제24조

대규모의 국제원조는 상세한 학술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가 행해진 후에 주어진다. 이 같은 연구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전시 및 기술 회복을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는 해당국가의 가용자원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아울러 모색하여야 한다.

제25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 사업의 일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다. 국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빼놓고 수혜국가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세계유산위원회와 수혜국가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이 주어지는 사업의 이행 조건에 대해 양자간 협정문을 체결한다. 국제지원을 받은 국가는 합의문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진다.

VI. 교육 사업

제27조

1. 체약국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교육 및 정보사업을 통해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및 존중심을 높이도록 힘쓴다.
2. 체약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8조

본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을 받는 체약국은 지원의 대상이 된 유산의 중요성 및 지원의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보 고

제29조

1. 체약국은 유네스코의 정기총회가 의결한 기간 및 양식에 따라 동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그 외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관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한 보고와 함께 통보한다.
2. 제1항의 보고는 세계유산위원회 공람에 부친다.
3.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의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VIII. 최종 조항

제30조

본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한다. 이들 다섯 개의 원문은 똑같이 정본으로 한다.

제31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각 회원국에 의해 각기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고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 및 수락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32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기총회에 초청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해 개방한다.
2. 가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제33조

본 협약은 제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및 가입서가 기탁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그리고 가입서 제출 후 3개월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4조

다음의 규정은 헌법상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제도를 취한 체약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가) 본 협약의 규정은 연방 및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권한 아래서 실시되는 국가에서의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정부의 의무와 동일하다;
- (나) 본 협약의 규정 중 연방의 헌법상의 제도에 의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 의무 지워지지 않는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법적 권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이들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해 채택에 관한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제35조

1. 체약국은 본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수령 후 12개월부터 발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하는 날까지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6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 32조의 비회원국 및 유엔에 대해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그리고 전조의 폐기 통고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37조

1. 협약은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개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해당 개정은 개정 협약의 체약국이 되는 국가에게만 해당된다.
2. 정기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을 경우, 새로운 개정 협약에 따라 정한 바가 없는 한, 새로운 개정 협약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구 협약을 비준, 수락하거나 가입할 수가 없다.

제38조

본 협약은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유엔사무국에 등록한다.

1972년 11월 23일 파리에서 유네스코 제17차 정기총회 의장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원본 2통을 작성한다. 원본은 유네스코에 기탁하도록 하고 그의 인증 등본은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국가 및 유엔에 속달한다.

이상은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1972년 11월 21일 폐회한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총회는,

기존의 인권관련 국제문서,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2001년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선언” 및 제3차 문화장관원탁회의에서 채택된 “2002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수단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고,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불관용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유산의 쇠퇴·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또한 초래함을 인정하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범적 문서의 성립에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주목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권고 및 결의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효과적으로 강화되고 보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 및 이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국제공동체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을 상기하며,
사람 사이를 더욱 긴밀히 하고 사람 사이의 교류와 이해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2003년 10월 17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다.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
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
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
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
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3.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구속되고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이 협약은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동 조에 언급된 영역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국제 문서와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 가. 무형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거나,
- 나. 당사국이 당사자로 있는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장 협약상의 기관

제4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기로 회합한다. 총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거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또는 당사국 최소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임시 회기로 회합할 수 있다.
3. 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5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원회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에 달하면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로 증가한다.

제6조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갱신한다.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최량의 관행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의 사용에 관한 계획안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방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다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1)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상 등재 및 제안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원조의 공여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방법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협의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민간 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기구의 인가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한다.
2. 위원회는 또한 위 인가의 기준 및 양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제10조 사무국

1. 위원회는 유네스코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제11조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나. 제2조제3항에 언급된 보호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한다.

제12조 목록

1. 보호를 위한 감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당사국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때 이러한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 보호를 위한 다른 조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다. 특히, 위협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의 장려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이 유산의 전수의 장려
-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제14조 교육·인식제고 및 능력형성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형성 활동
-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제15조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제16조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1.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한다.
2. 위원회는 이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17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1.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제18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적·소지역적·지역적 유산보호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원조 요청을 접수·검토 및 승인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량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사업·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

제5장 국제협력 및 원조

제19조 협력

1.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 국제원조의 목적

국제원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의 준비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의 지원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목적

제21조 국제원조의 형식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원조는 제7조에 언급된 운영 지시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나. 전문가 및 기능보유자의 제공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라. 표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마련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원조

제22조 국제원조의 조건

1. 위원회는 국제 원조 요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용산정 등 요청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한다.
2. 긴급상황시 위원회는 원조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협의를 수행한다.

제23조 국제원조 요청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원조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은 또한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이러한 요청은 필요서류와 함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24조 수혜당사국의 역할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원조는 수혜당사국과 위원회간 협정으로 규율된다.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 원조가 공여된 보호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 한도 내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공여된 원조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장 무형문화유산기금

제25조 기금의 성격 및 재원

1.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이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이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가. 당사국의 분담금
 -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한 자금
 - 다. 다음에 의할 수 있는 기부·증여 및 유증
 - (1) 다른 국가
 -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기구
 -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 마. 모금을 통하여 마련된 자금 및 기금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로부터의 수입
 -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일 것을 조건으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의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원조를 수령할 수 있다.
6. 이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분담금에 대한 영향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동일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시 자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가 개최하는 날까지 이 국가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5.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선거시 종료된다.

제27조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제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28조 국제적 모금 운동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원한다.

제7장 보고서

제29조 당사국 보고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0조 위원회 보고서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29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제8장 경과 규정

제31조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와의 관계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포된 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2. 위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대한 통합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이 예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위 선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제9장 최종 규정

제32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각각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2.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3조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의 가입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자치 정부를 가지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체결권 등 권한을 가진 영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4 조 발 효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월 후 그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용된다.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구성 주·국·도 또는 현의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그러한 주·국·도 또는 현에 채택 권고와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36조 협약의 탈퇴

1. 당사국은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써 통고된다.

3. 탈퇴는 탈퇴통고서 수령 후 12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는 탈퇴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 기탁처의 기능

이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36조에 규정된 탈퇴통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38조 개 정

1.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한다. 통보가 회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을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은 채택된 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제출된다.
4. 개정은 당사국 3분의 2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월 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5조의 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다음으로 본다.
 -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제39조 정본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6개의 문서로 작성되었다.

제40조 등록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2003년 11월 3일 파리에서 제32차 총회의장 및 유네스코사무총장이 서명한 두 통의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이 두 정본은 유네스코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은 제32조 및 제3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위의 내용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2003년 10월 17일 폐회가 선언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2003년 11월 3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총회의장 사무총장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발효일 2010. 10. 06] [제2026호, 2010. 10. 1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03년에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6년 4월에 발효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상기하고,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따라,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하는 센터에 부여할 지원에 관한 용어와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해석

1. 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지칭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한다.
3.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지칭한다.
4.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을 지칭한다.
5. "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지칭한다.
6. "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칭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2010년까지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
국과 준회원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독립기관이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이런 취지에 대한 통지를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센터와 상기에 언급된 회원국에 이러한 통지의 접수를 통보한다.

제4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력과 관련된 용어 및 조건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데 있다.

제5조 법인격

센터는 특히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을 계약, 취득, 처분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할 능력을 동반하는, 법인격을 가진다.

제6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국내법하에서 센터의 기능 수행과, 재정 확보, 활동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 획득 및 기능작
용에 필요한 모든 수단 취득에 필요한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센터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
- 나. 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 체계

제7조 목적과 기능

1. 센터는 정보 및 네트워킹을 전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 협약 이행에의 기여
 - 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단체, 개인의 참여 증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과 인식 제고
 - 다. 정보의 조정과 보급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촉진
2.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효과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기록작성 지원,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의 지원
 - 나. 무형문화유산 보급을 위하여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데이터 활용,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생산 및 출판, 기록 및 정보 자료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실연자(實演者) 및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
 - 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 강화를 위한 관련 지역사회와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 구축

- 및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공공행사와 회의 조직
- 라. 개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간뿐만 아니라 특히 유네스코 후원으로 설립된 무형문화유산 센터 및 연구소(카테고리 2)를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 센터 및 연구소 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네트워크의 강화
3. 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2003년 협약, 특히 협약의 목적과 대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수행된다.

제8조 이사회

1. 센터는 2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대표자로서, 직무상 이사회 의장
 - 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2명
 - 다. 제3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전달하고 센터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유네스코 회원국 중 가능한 한 공정한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대표자 5명 이내
 - 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자
 - 마. 대한민국의 체휴 및 협력 기구 대표자 2명 이내
 - 바. 이사회 결정으로 의석이 허용될 수 있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대표자 2명 이내 센터 소장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가. 집행위원회의 위원 선출
 - 나. 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 다. 직원 구성을 포함하여 센터의 연간 업무 계획 및 예산 승인
 - 라. 센터 소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검토
 - 마. 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 관리 절차의 결정
 - 바. 지역적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센터 업무에의 참여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의 정기적인 간격의 일반 회기를 개최한다. 의장의 발의로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 특별 회기가 개최된다.
4. 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회의를 위한 의사절차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수립한다.

제9조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회기 사이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권한을 상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센터의 사무국은 소장과 센터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원들로 구성된다.
2. 센터 소장은 이사회 의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3. 사무국의 그 밖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가.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 소장이 임명한 사람
 - 나.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
 - 다. 유네스코 규정과 운영기구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유네스코 직원의 일원

제11조 소장의 의무

소장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 가.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과 지침에 따른 센터 업무 지시
- 나. 이사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업무 계획의 초안 및 예산안 제안
- 다. 이사회 회기 잠정의제 준비 및 센터 운영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사안 제출
- 라. 이사회 제출을 위한 센터 활동보고서 준비
- 마. 법률상 및 모든 민사활동에서의 센터 대표

제12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대상에 따라 센터의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 기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2. 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가 지원의 제공
 - 나. 유네스코가 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센터의 참여가 유네스코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활동에 센터 포함
 - 다. 센터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3. 상기 내용 중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 규정 외의 지원은 이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소장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와 수당,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회기 개최 비용을 포함하여 센터의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담
 - 나. 센터 사무국을 위한 사무공간, 자료실, 회의실, 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센터에 이용 가

능하도록 함

- 다. 시설 유지의 전적인 부담과 센터의 통신 및 그 밖의 설비 비용 부담
- 라. 센터에 연간 최소 500,000 미국 달러 기여
- 마.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회계사와 기술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 직원 제공

제14조 특권과 면제

정부는 센터와 관련하여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아 센터에 온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책임

센터는 법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이 협정에 명백하게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정적 및 다른 어떠한 형태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센터가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나.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제17조 유네스코 명칭과 의장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센터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운영기구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의장과 변형된 의장을 편지 서식과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발효

이 협정은 계약당사자의 서명 후, 발효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규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서면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지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제19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며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제20조 폐기

1. 각 계약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폐기는 어느 한 쪽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보낸 통보가 접수된 날 이후 6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 동의하에 개정될 수 있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며, 제1위원은 정부의 대표가,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문화재관계법령집

발행일 : 2011년 4월
발행인 : 문화재청
발행처 :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전화 : 042) 481-4788, 4789
팩스 : 042) 481-4649
인쇄처 : 부운디자인 ☎ 042) 255-6225

ISBN : 978-89-6325-619-1 93360

※ 이 책의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